

발간등록번호

수탁 / 2024-03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5. 2. 17.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개발기간 : 2024.1.1. ~ 2024.12.3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2. 17.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구명희

참여연구자 : 김주호

김현홍

강아현

김다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 최종보고서 | | | | | | | 보안등급 | | | | | |
|-------------------------|---------------------|--------------------------------------|--|------------------|--------------------------|-------------------|---------------------|-------|----|---------|-----------------------|----|
| | | | | | | | 일반[○], 보안[] | | | | | |
| 중앙행정기관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사업명 |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 | | | |
|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 | - | |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 | | | | |
| 공고번호 | | - | |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 | | | | | |
| 기술 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SB1102 (정책결정/집행) | 50 % | SB1199 (공공정책) | 30 % | SB9999 (정치/행정) | 20 % | | | | | |
|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 | - | - | - | - | - | | | | |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 | 국문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 | | | | | | | | |
| | | 영문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명 | | 국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 | | | | | | | |
| | | 영문 | The Study on indirect - cost ratio allocation and system management of National R&D Funding for non - profit corporation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229-82-01678 | | | | | |
| | | 주소 |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39 | | 법인등록번호 | | 110271-0004210 | | | | | |
| 연구책임자 | | 성명 | 구명회 | | 직위 | | 연구위원 | | | | | |
| 연구개발기간 |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 | | | | | | | |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 합계 | | |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 | | | |
| | | 현금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합계 |
| | | 180,000 | - | - | - | - | - | - | - | 180,000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비고 | | | | | |
| | | | | | | | 역할 | 기관유형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해당없음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기관 | | | | | | | | | | | | |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 | | | | | | | | | | |
| 실무담당자 | | 성명 | 김다빈 | | 직위 | | 연구원 | | | | | |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연구책임자: 구명회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정병선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요약 문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 |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 | | | | | |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 |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 | | | | |
| 기술 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SB1102 (정책결정/집행) | | 50% | SB1199 (공공정책) | | 30% | SB9999 (정치/행정) | | 20% | | | |
|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 | |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명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 | | | | | | | |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2024. 1. 1.~ 2024. 12. 31. | | | | | | | | | | | |
| 총 연구개발비 | | 총 180,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0,000천원) | | | | | | | | | | | |
| 연구개발단계 | |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 |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 | | | |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 최종 목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 | | | | | | | | |
| | | 전체 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0개 기관 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추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제도개선 사항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등 추진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60개 기관)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고시자료로 활용 ○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하여 산출 | |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 |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기탁 건수 | | 논문 | 특허 | 보고서 원문 | 연구 시설· 장비 | 기술 요약 정보 | 소프트 웨어 | 표준 | 생명자원 | | 화합물 | 신품종 | |
| | | | | 1 | | | | | 생명 정보 | 생물 자원 | | 정보 | 실물 |
|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 | 과학적 성과 | | | | 사회적 성과 | | | | | | | 기타 |
| | | 논문 게재 | 학술 회의 발표 | 보고서 원문 | 법령 반영 | 정책 활용 | 안전 상정 | 제도 개선 | 다른 연구에 활용 | 국제 협력 | (정책) 홍보 | 포상 ·수상 | |
| | | | | 1 | | 1 | 1 | | | | | | |
| 국문핵심어 (5개 이내) | | 국가연구개발 사업 | | 비영리기관 | | 간접비고시비율 | | | | | | | |
|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 National R&D project | | Non-profit corporation | | Indirect-cost ratio | | | | | |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교수, 공인회계사, 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적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회계기준 개정을 위해 회계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고, 2차례 회의 및 연구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회계기준 개정(안) 마련하고, 과기부에서 확정된 후 해당 비영리기관에 통보함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 (산출기준 마련)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연) 및 기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60개 기관) 및 고시
 - (회계기준 개정) 비영리기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안) 마련하고, 과기부에서 확정된 후 해당 비영리기관에 통보
-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최종보고서
-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 번호 | 논문명 | 학술지명 | 주저자명 | 호 | 국명 | 발행기관 | SCIE 여부 (SCIE/비SCIE) | 게재일 | 등록번호 (ISSN) | 기여율 |
|----|-----|------|------|---|----|------|-------------------------|-----|----------------|-----|
| | | | | | | | | | |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 번호 | 회의 명칭 | 발표자 | 발표 일시 | 장소 | 국명 |
|----|-------|-----|-------|----|----|
| | | | | | |

보고서 원문

| 연도 | 보고서 구분 | 발간일 | 등록 번호 |
|------|--------|------------|------------|
| 2024 | 최종보고서 | 2025.2.17. | 수탁2024-039 |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 번호 | 구분 (법률/시행령) | 활용 구분 (제정/개정) | 명 칭 | 해당 조항 | 시행일 | 관리 부처 | 제정/개정 내용 |
|----|----------------|------------------|--------------------------------|-------|---------|---------------|---------------------------------------|
| 1 | 고시 | 개정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2025.3.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정책활용 내용

| 번호 | 구분 (제안/채택) | 정책명 | 관련 기관 (담당 부서) | 활용 연도 | 채택 내용 |
|----|---------------|-----|------------------|-------|-------|
| | | | | | |

안건 상정

| 번호 | 상정위원회 | 안건명 | 상정일자 | 안건내용 |
|----|------------------|---|------------|---|
| 1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작성 지침 및 해설 | 2024.4.30 |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심의·의결 |
| 2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 2024.12.17 |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의결 |

□ 제도 개선

| 번호 | 제도명 | 관련 기관 (담당 부서) | 추진일자 | 개선내용 |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학기술부 | 2024.12.10 | 국가R&D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출연(연)과 기타 비영리 기관 간의 회계기준 통일성 강화, 공통수익·비용 배부기준 을 제시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 |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번호 | 중앙행정기관명 | 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비 |
|----|---------|-----|---------|-------|-------|
| | | | | | |

□ 국제화 협력성과

| 번호 | 구분 (유치/파견) | 기간 | 국가 | 학위 | 전공 | 내용 |
|----|---------------|----|----|----|----|----|
| | | | | | | |

□ (정책) 홍보 실적

| 번호 | 홍보 유형 | 매체명 | 제목 | 홍보일 | 홍보효과 |
|----|-------|-----|----|-----|------|
| | | | | | |

□ 포상 및 수상 실적

| 번호 | 종류 | 포상명 | 포상 내용 | 포상 대상 | 포상일 | 포상 기관 |
|----|----|-----|-------|-------|-----|-------|
| | | | | | | |

[기타 성과]

| |
|--|
| |
|--|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 |
|--|
| |
|--|

2) 목표 달성 수준

| 추진 목표 | 달성 내용 | 달성도(%)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안) 마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4.30) | ·100%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 의결 및 고시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위원회 심의·의결('24.12.17)을 하였고, 심의·의결 결과를 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25.3) | ·100%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 회계기준 개정을 확정하여 해당 비영리기관에 통보('24. 12. 10) | ·100%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자체 보완활동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해당 비영리기관에 동일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 제시에 기여
- 기관별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적정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모든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율 산출 기준을 통일시키는데 기여하였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2026년도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활용할 계획임

< 별첨 자료 >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 별첨 자료 |
|-------------|-------|
| 1. | 1) |
| | 2) |
| 2. | 1) |
| | 2) |

요약문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배경

-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분야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필요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산출의 회계기준을 개정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통일성 유지 필요

II. 연구내용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 교수, 공인회계사, 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간접비실사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에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회계기준 제정('20.8)이후 4년이 경과 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 등 변경에 따른 회계기준 개정

III. 연구결과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분야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 결정
- 주요 변경 사항
 - 의무기관 확대
 -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출연(연)으로 분류하여, 정부출연기관 고시비율 산출 의무기관에 추가(2024년부터 적용)
 - ※ 관리·감독 주체가 산업부라는 점, 국가 회계연도를 적용한다는 점, 결산 회계를 4개 과기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 고려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무기관 제외
 - (요청사항) 전문(연) 및 산업부는 전문(연)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의무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 요청('21년~)
 - 전문(연)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의무기관으로 보기는 곤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문(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대안) 전문(연)이 역량에 맞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기관으로 전환(의무기관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신청했으나 고시비율이 17% 이하로 산출된 경우에도 산출된 고시비율을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
 - (문제점)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연구지원체계평가 없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
 - (대안) 20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의무로 하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른 가·감률을 2026년부터 적용
 - (예외) 전문(연)은 20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를 유예하였으므로 임의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올해부터 가·감률 적용
- 비영리기관 제출자료 명확화
 - (현황)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해 회계기준*을 마련·배포하여 대부분 기관은 적용 중이나(20.8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원칙을 정할 수 있음
 -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부 전문(연), 임의기관은 간접비 산출기준에 부합하도록 결산서를 변환한 자료(변환보고서)를 제출 중
 - (문제점) 그간 변환보고서 제출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결산서가 아니므로 간접비 산출 시점에만 단발적으로 작성·사용
 -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신뢰성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간접비 잔액 등 연속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에도 애로
 - (대안) 2024년에는 신뢰 보호를 위해 변환보고서를 허용하되, 2026년부터는 간접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 후 제출하도록 명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2025~2026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등 60개 대상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분야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 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을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산출 대상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및 기관별 관계자 대면 검토 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간접비실사비율(안) 도출
-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정부출연(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현황(총괄)

| 구분 | 의무기관 | | | | | 임의기관 | 계 |
|--------|-------|-------------|-------|-------------|-------|--------------|----|
| | 출연(연) | 출연(연) 부설 | 특정(연) | 특정(연) 부설 | 전문(연) | 기타 비영리(연) | |
| 산출기관 수 | 23 | 6 | 11 | 5 | 8 | 7* | 60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전문기관으로써 산출 예외기관으로 제외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5.00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2.19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3.76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2.55 |
| | 한국기계연구원 | 13.10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2.90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2.48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2.65 |
| | 한국식품연구원 | 23.11 |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16.49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7.03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22.89 |
| | 한국재료연구원 | 10.30 |
| | 한국전기연구원 | 14.11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29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23.78 |
| | 한국천문연구원 | 19.06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2.17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2.80 |
| | 한국한의학연구원 | 22.41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5.36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1.92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26.02 |
| | 한국화학연구원 | 20.09 |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5.00 |
|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16.35 |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19.26 |
| | 극지연구소 | 8.01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4.93 |
| | 세계김치연구소 | 17.77 |
| | 안전성평가연구소 | 17.34 |

•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특정연구기관 (12개) | 광주과학기술원 | 26.49 |
| | 기초과학연구원 | 5.00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8.84 |
| | 울산과학기술원 | 25.67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18 |
| | 한국과학기술원 | 23.50 |
| | 한국과학창의재단 | 17.00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2.99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20.35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30.19 |
| | 한국원자력의학원 | 27.05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7.24 |
|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 고등과학원 | 19.73 |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5.00 |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11.67 |
| | 나노종합기술원 | 16.39 |
| | 한국뇌연구원 | 29.70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16.11 |
| | 한국광기술원 | 20.30 |
|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20.70 |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21.88 |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25.85 |
| | 한국자동차연구원 | 18.30 |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24.13 |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22.13 |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 고등기술연구원 | 18.40 |
| | 삼성서울병원 | 22.03 |
| | 키엘연구원 | 18.56 |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17.10 |
| | 한국나노기술원 | 17.55 |
| | 한국선급 | 24.52 |
|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36.8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고시 비율(안) 최종 확정 ('24.12.20)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6에 고시('25. 3)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24.12.10)

- 국가R&D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보안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등 연구 직접비 필수 항목 추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등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금 계정 반영**
- 출연(연)과 기타 비영리기관 간의 회계기준 통일성 강화
 - 현재 출연(연) 회계기준과 기타 비영리기관 회계기준 간 통일성 부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일관성 및 형평성 저하
 - 출연(연)과 기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통일화하여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의 신뢰성 증대**
- 공통수익·비용 배부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
 - 연구사업과 기관 목적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기관별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 *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 빈도, 활동 비중, 제원조달 비중, 총수익 비율, 간접비수익 비율 등
- 기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의 공신력 강화
 - 그간 간접비 산출 시 비공식 변환보고서 제출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관의 공식 결산서가 아니므로 제출자료의 신뢰성 우려 제기
 - 2026년 간접비 산출부터는 **간접비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 후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작성기준이 되는 **간접비 회계기준을 신속히 개정하여 공신력 강화 필요**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3 |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4 |
| | |
| 제2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 7 |
| 제1절 추진근거 | 9 |
| 제2절 추진경과 | 10 |
| 제3절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11 |
| 제4절 가·감률 기준 | 12 |
| 제5절 주요 변경사항 및 심의사항 | 14 |
| | |
| 제3장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 17 |
| 제1절 산출 개요 | 19 |
| 1. 대상기관 | 19 |
| 2. 산출절차 | 20 |
| 3. 제출자료 | 21 |
| 4. 산출방법 | 22 |
| 5. 대면검토 | 23 |
| 6. 이의신청 심의 | 25 |
|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 26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31

제1절 회계기준 개정 배경 및 목적 34

 1. 회계기준 개정 배경 34

 2. 회계기준 개정 목적 34

제2절 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35

 1. 재무상태표 35

 2. 운영성과표 36

 3. 주식 및 부속명세서 39

 4. 부칙 40

제3절 향후 추진일정 41

제5장 결론 127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29

 1. 교육·파견인력인건비 항목 수정 129

 2. 연구지원비 중 기반시설·장비의 구축 운영비 제외 130

 3. 기술지원수익의 정의 수정 131

 4. 기타연구사업수익 범위 수정 132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 제외사업 수정 133

 6. 검토의견서 간접비실사 비율 산출 수식 표준화 135

제2절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36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136

 2.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137

표 목 차

| | |
|---|----|
| 〈표 2-1〉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 12 |
| 〈표 2-2〉 별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 13 |
|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 13 |
| 〈표 3-1〉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 20 |
| 〈표 3-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 24 |
| 〈표 3-3〉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 26 |
| 〈표 3-4〉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 28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 5 |
|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 12 |
|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 20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가 필요
- 이러한 간접비 비중의 증가추세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출연(연), 특정(연), 기타 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로 적절한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매 2년 마다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
- 아울러,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 산출절차 등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비영리기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2025~2026년도 적용할 정부 출연(연), 특정(연), 기타 비영리기관 2024년도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안) 산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정부 출연(연)과 특정(연) 소속 회계 및 간접비 전문가로 간접비제도 개선 작업반을 구성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정부출연(연) 등 분야는 간접비 비율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이를 반영한 산출기준(안) 설정
- 도출된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안)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정부 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24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최종 확정하고(2024. 12. 20),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25. 3)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체계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제 2 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제1절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2년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 22조 제 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

제22조(간접비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24.4.30/제2차 간접비산출위)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세부 산출기준 확정
- '24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24.5.13)
- '24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설명회('24.4.16, KAIST 서남표 퓨전홀)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실시('24.4.17~7.12)
 - 대상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접수('24.4.17~'24.6.14)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 회의(6.24)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분과별 실사(7.8~12) 및 검증(8.29)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1.21~12.02)
- '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1.11~21)
- '24년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심의('24.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25. 3)

제3절 정부출연(연)·특정(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 = A + B

$$\blacksquare A \text{ (실지출 간접비비율)} = \frac{\text{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text{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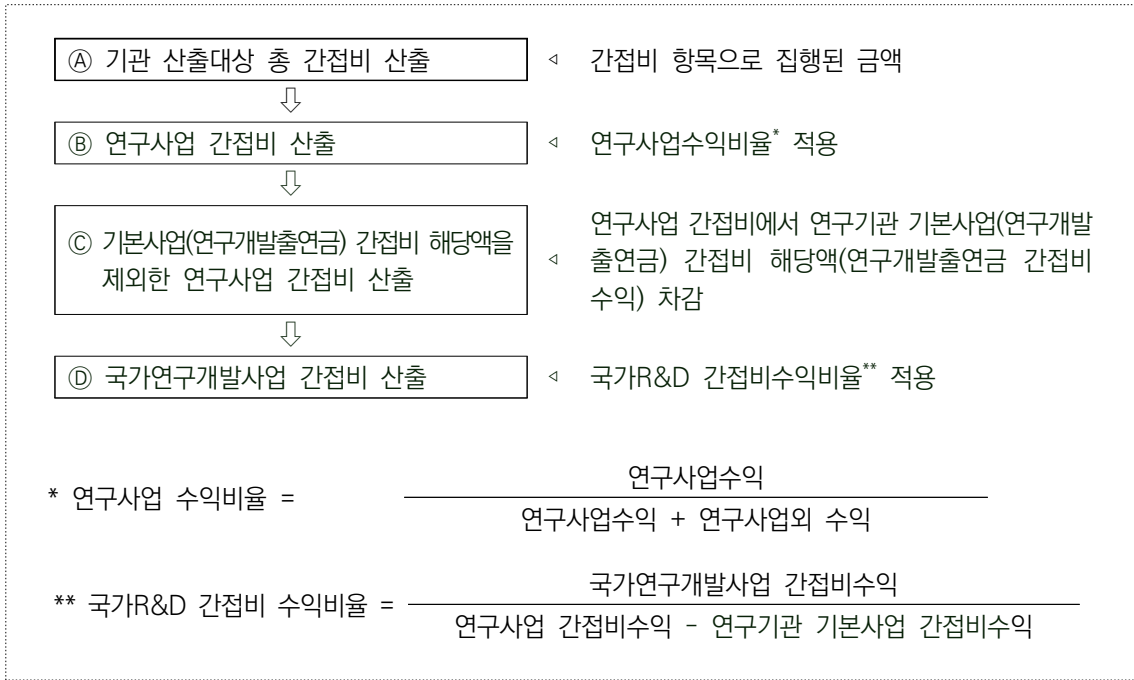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blacksquare B \text{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frac{\text{③ 추가소요 간접비}^{**}}{\text{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 산출 원칙

-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실사비율(A)의 산술평균(A₂₀₂₂+A₂₀₂₃/2)에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기관의 총 간접비 집행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 비율을 절차에 따라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국가 R&D 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등 직접비
- 추가소요 간접비 :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비용으로 인정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제4절 가·감률 기준

□ 정부출연(연)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원가 산출 후 가·감률 기준을 적용

○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표 2-1>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 연구사업수 익규모 | 평가결과 | | | | | | |
|--------------|---------------|---------------|---------------|---------------|---------------|---------------|---------------|
| | S등급 95점 이상 | A등급 90~94점 | B등급 85~89점 | C등급 80~84점 | D등급 75~79점 | E등급 70~74점 | F등급 70점 미만 |
| 대 | 10% | 6% | 3% | 0% | -3% | -6% | -10% |
| 중 | | | | | -2% | -4% | -6% |
| 소 | | | | | -1% | -2% | -3% |

※ (예시1) 간접비실사비율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규모 "대"인 기관의 경우 : 실사비율 23% x 6% =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한 임의기관은 가·감률 미적용

○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적용

〈표 2-2〉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 기관별 벌점 누계 (2개 회계연도 누계) | 감률 |
|---------------------------|-----------|
|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 감률 10% 적용 |
|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 감률 6% 적용 |
|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 감률 3% 적용 |
|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 개선 권고 |
|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 적발건수 | 적용기준 | 가중치 | 감률 |
|-------|-------|-----|-------|
| 1건 | 3.0%p | 0.6 | 1.8%p |
| 2건 | 3.0%p | 0.7 | 2.1%p |
| 3건 | 3.0%p | 0.8 | 2.4%p |
| 4건 | 3.0%p | 0.9 | 2.7%p |
| 5건 이상 | 3.0%p | 1.0 | 3.0%p |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text{①간접비실사비율} + \text{②}\{\text{간접비실사비율} \times (\text{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 \text{부실자료제출 감률})\} + \text{③부당자료제출 감률}$$

제5절 주요 변경사항 및 심의사항

□ 의무기관 확대

-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출연(연)으로 분류하여, 정부출연기관 고시비율 산출 의무 기관에 추가(2024년부터 적용)
 - 관리·감독 주체가 산업부라는 점, 국가 회계연도를 적용한다는 점, 결산 회계를 4개 과기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 고려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무기관 제외

- (요청사항) 전문(연) 및 산업부는 전문(연)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의무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 요청(21년~)
 - 전문(연)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의무기관으로 보기는 곤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문(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대안) 전문(연)이 역량에 맞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기관으로 전환(의무기관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신청했으나 고시비율이 17% 이하로 산출된 경우에도 산출된 고시비율을 적용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

- (문제점)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연구지원체계평가 없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
- (대안) 2024년 연구지원체계평가는 의무로 하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른 가·감률을 2026년부터 적용
- (예외) 전문(연)은 20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를 유예하였으므로 임의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올해부터 가·감률 적용

□ 비영리기관 제출자료 명확화

- (현황)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해 회계기준*을 마련·배포하여 대부분 기관은 적용 중이나(20.8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원칙을 정할 수 있음
-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부 전문(연), 임의기관은 간접비 산출기준에 부합하도록 결산서를 변환한 자료(변환보고서)를 제출 중
- (대안) 전문(연)이 역량에 맞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기관으로 전환(의무기관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신청했으나 고시비율이 17% 이하로 산출된 경우에도 산출된 고시비율을 적용
- (문제점) 그간 변환보고서 제출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결산서가 아니므로 간접비 산출 시점에만 단발적으로 작성·사용
 -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신뢰성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간접비 잔액 등 연속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에도 애로
- (대안) 2024년에는 신뢰 보호를 위해 변환보고서를 허용하되, 2026년부터는 간접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 후 제출하도록 명확화

제 3 장

정부출연(연)·특정(연)· 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1절 산출 개요

1. 대상기관

□ 의무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참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③ 특정연구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 ①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②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③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④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의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 임의기관

-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17% 적용

*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재 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제외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 공통 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표 3-1〉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
| 정부출연(연) (24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 출연(연) 부설 (7개)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극지연구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
| 특정(연) (12개)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특정(연) 부설 (5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뇌연구원 |
| 임의기관 (기타비영리기관) | 최근 3년간(2020~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개발비 재지급 사업 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 포함) 중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고,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분류 편의상 의무기관 중 정부출연(연)으로 분류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분류

2. 산출절차

| 추진단계 | 추진주체 | 세부추진사항 |
|--------------------|--------------------|--|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 • 출연(연) 분야의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산출 • 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 |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확정 |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심의 |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3. 제출자료

- 기본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자료 등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 번호 | 표준 템플릿 제목 | 세부내역 | 자료 형식 | 필수/예시 구분 | 템플릿 제공 여부 |
|----|---|--|--------|----------|-----------|
| 0 | 2024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 | 엑셀 | 필수 | ○ |
| 1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 | 한글/PDF | 필수 | ○ |
| 2 |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 | 엑셀 | 필수 | ○ |
| 3 |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 | PDF | 필수 | ○ |
| 4 | 출연(연) 등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 | 엑셀/PDF | 필수 | ○ |
| 5 | 출연(연)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 | PDF | 필수 | X |
| 6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차 검증자료 | | 엑셀 | 필수 | ○ |
| 7 | 인건비 세부내역 | | 엑셀 | 예시 | ○ |
| 8 |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 | 엑셀 | 예시 | ○ |
| 9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 | 엑셀 | 필수 | ○ |
| 10 |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 | 엑셀 | 필수 | ○ |
| 11 |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 11-1. 기관공통지원경비 | 엑셀 | 필수 | ○ |
| | | 11-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엑셀 | 필수 | ○ |
| | | 11-3.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 엑셀 | 필수 | ○ |
| | | 11-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엑셀 | 필수 | ○ |
| | | 11-5. 학생산재보험료 | 엑셀 | 필수 | ○ |
| | | 11-6. 연구보안관리비 | 엑셀 | 필수 | ○ |
| | | 11-7. 연구윤리활동비 | 엑셀 | 필수 | ○ |
| | | 11-8. 연구활동지원금 | 엑셀 | 필수 | ○ |
| | | 11-9. 과학문화활동비 | 엑셀 | 필수 | ○ |
| | | 11-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엑셀 | 필수 | ○ |
| 12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차 검증자료 | | 엑셀 | 필수 | ○ |
| 13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 | 엑셀 | 필수 | ○ |
| 14 |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 엑셀 | 필수 | ○ |
| 15 |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 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 문서 | 예시 | X |
| 16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 문서 | 필수 | X |
| 17 |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 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 문서/엑셀 | 필수 | X |

□ 별도자료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자료
- 추가소요 및 특이 사항 증빙 등 근거자료

4. 산출방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위원 등을 활용하여 검토위원 구성·운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 소속 위원,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2인 1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운영

□ 서면검토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기관별 제출자료 검토 실시,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1차 서류검토 회의('24. 6. 24)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별 템플릿 제출여부 확인, 기관별 수정·보완 사유 및 요청자료 정리 등(형식적 검토)

□ 대면검토

- 분과별·일정별로 연구개발기관별 대면 방법에 의해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간접비 비율 산출 관련 자료를 확인,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검토('24. 7.8~12)
-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 산출된 실적 간접비 비율(안)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최종검토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검토 후 특이사항,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관별 간접비고시 비율(안) 확정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24. 8. 29)
 -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시 제기된 이슈 사항 논의 및 적용 기준 결정, 향후 추진계획 논의 및 결정 등

5. 대면검토

□ 일 시 : 2024. 7. 8(월) ~ 12 (금) (5일간)

□ 장 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 대상기관 : 총 60개 기관

- 정부출연(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3개 기관
- 출연(연)부설 : 극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
- 특정(연)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11개 기관
- 특정(연)부설 :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5개 기관
- 전문생산(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
- 기타 비영리(연) : 고등기술연구원, 삼성서울병원 등 7개 기관

□ 검증일정

〈표 3-2〉 간접비고사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 날짜 | 시간 | 1분과 (허대성, 오현석) | 2분과 (이두영, 김진필) | 3분과 (박형근, 이희찬) | 4분과 (안병준, 김중혁) |
|------------------|-------------|----------------------|---------------------|-------------------|---------------------|
| 7.8. (월) | 10:00~11:30 | 사전 전략회의 | | | |
| | 11:30~13:00 | 점 심 | | | |
| | 13:00~15:00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 | KISTEP/KIRD (충북) |
| | 15:00~15:30 | 추가검토 및 휴식 | | | |
| | 15:30~17:30 |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 울산과학기술원 (울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 |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
| | 17:30~18:00 | 추가검토 및 마무리 | | | |
| 7.9. (화) | 10:00~12:00 | 한국과학창의재단 (서울) | 나노종합기술원 (대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 | 키엘연구원 (부천) |
| | 12:00~13:30 | 점 심 | | | |
| | 13:30~15:3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 한국광기술원 (광주) |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 | 한국천문연구원 (대전) |
| | 15:30~16:00 | 추가검토 및 휴식 | | | |
| | 16:00~18: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경산)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군산) |
| | 18:00~18:30 | 추가검토 및 마무리 | | | |
| 7. 10. (수) | 10:00~12:00 | 고등과학원 (서울) | 고등기술연구원 (경기)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경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경기) |
| | 12:00~13:30 | 점 심 | | | |
| | 13:30~15:30 | 한국뇌연구원 (대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부산) |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
| | 15:30~16:00 | 추가검토 및 휴식 | | | |
| | 16:00~18:00 |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부산) |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 | 삼성서울병원 (서울) | 세계김치연구소 (광주) |
| | 18:00~20:00 | 한국나노기술원 (수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전) | 극지연구소 (인천)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전) |
| 20:00 | 추가검토 및 마무리 | | | | |
| 7. 11. (목) | 10:00~12:00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 |
| | 12:00~13:30 | 점 심 | | | |
| | 13:30~15:30 | 한국재료연구원(창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
| | 15:30~16:00 | 추가검토 및 휴식 | | | |
| | 16:00~18: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 | 한국기계연구원 (대전) | 한국선금 (부산) |
| | 18:00~18:30 | 추가검토 및 마무리 | | | |
| 7. 12. (금) | 10:00~12: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
| | 12:00~13:30 | 점 심 | | | |
| | 13:30~15:3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나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 |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
| | 15:30~17:30 | 한국식품연구원 (완주)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
| | 17:30 | 추가검토 및 마무리 | | | |

□ 검증방법

- 분과별 위원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기관의 담당자간 산출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제출자료 타당성 미흡 시 추가 보완 자료 제출 등

6. 이의신청 심의

□ 일 시 : 2024. 12. 2(월), 10:30~12:00

□ 장 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13층 대회의실(서울역 14번 출구)

□ 대상기관 : 총 2개 기관

- 한국나노기술원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사유,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기관 당 10분)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응답 등 (20분)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 총괄현황

〈표 3-3〉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 년도 | 구분 | 의무기관 | | | | | 임의기관 | 계 |
|-----|--------|-------|-------------|-------|-------------|-------|----------------|----|
| | | 출연(연) | 출연(연) 부설 | 특정(연) | 특정(연) 부설 | 전문(연) | 기타 비영리 (연)* | |
| '22 | 산출기관 수 | 22 | 6 | 11 | 5 | 13 | 7 | 64 |
| '24 | 산출기관 수 | 23 | 6 | 11 | 5 | 8 | 7* | 60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전문기관으로 산출 예외기관으로 분류

□ 전년도 대비 간접비 증감율

○ '24년 간접비 평균 비율은 17.99%로 '22년 17.54대비 0.4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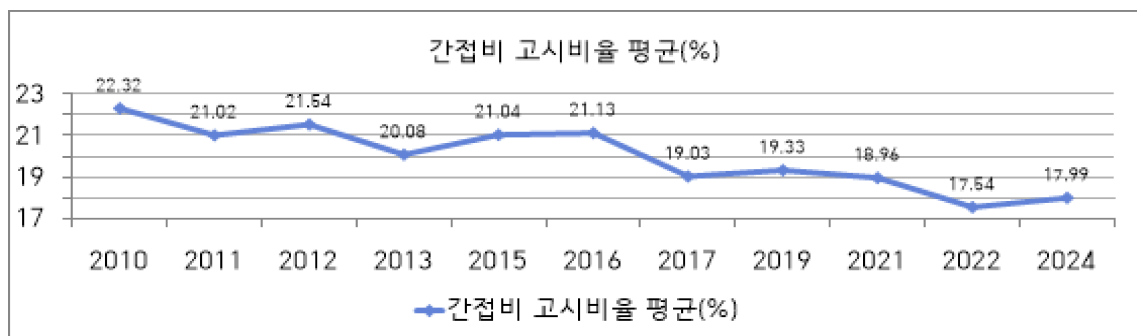
| 구분 | 의무기관 | | | | | 임의기관 | 고시 평균(%) |
|---------------|-------|-------------|-------|-------------|-------|---------------|-------------|
| | 출연(연) | 출연(연) 부설 | 특정(연) | 특정(연) 부설 | 전문(연) | 기타 비영리 (연) | |
| '22년 평균 (A,%) | 16.77 | 16.12 | 19.87 | 14.96 | 16.63 | 21.10 | 17.54 |
| '24년 평균 (B,%) | 15.94 | 14.09 | 20.45 | 16.49 | 21.47 | 22.13 | 17.99 |
| 증감 (B-A,%p) | △0.83 | △2.03 | 0.58 | 1.53 | 4.84 | 1.03 | 0.45 |

□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2010~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13년 이후 2년마다 고시(단, 16년은 수정 고시함)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5 | 2016 | 2017 | 2019 | 2021 | 2022 | 2024 |
|-------------------|-------|-------|-------|-------|-------|-------|-------|-------|-------|-------|-------|
| 간접비 고시비율 평균(%) | 22.32 | 21.02 | 21.54 | 20.08 | 21.04 | 21.13 | 19.03 | 19.33 | 18.96 | 17.54 | 17.99 |



□ 간접비고시비율 특이기관

| 구분 | 기관명 | 특이사항 | 산출위원회 결정사항 |
|-----------------|---------------------|---|--|
| 출연(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미제출기관은 5% 적용 |
| 출연(연) 부설 |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 | |
| 특정(연) | 기초과학연구원 | | |
| 특정(연) | 한국과학창의재단 | 수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 인력양성 · 기반 구축 등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적용 가능사업으로 구성 | 간접비 원가산출의 실익이 없는 기관으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주하여 17% 적용 |
| 기타 비영리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간접비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전문기관) |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으로 17% 적용 |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현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표 3-4〉 2024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5.00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2.19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3.76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2.55 |
| | 한국기계연구원 | 13.10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2.90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2.48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2.65 |
| | 한국식품연구원 | 23.11 |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16.49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7.03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22.89 |
| | 한국재료연구원 | 10.30 |
| | 한국전기연구원 | 14.11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29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23.78 |
| | 한국천문연구원 | 19.06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2.17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2.80 |
| | 한국한의학연구원 | 22.41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5.36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1.92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26.02 |
| | 한국화학연구원 | 20.09 |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5.00 |
|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16.35 |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19.26 |
| | 극지연구소 | 8.01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4.93 |
| | 세계김치연구소 | 17.77 |
| | 안전성평가연구소 | 17.34 |

○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특정연구기관 (12개) | 광주과학기술원 | 26.49 |
| | 기초과학연구원 | 5.00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8.84 |
| | 울산과학기술원 | 25.67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18 |
| | 한국과학기술원 | 23.50 |
| | 한국과학창의재단 | 17.00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2.99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20.35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30.19 |
| | 한국원자력의학원 | 27.05 |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7.24 |
|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 고등과학원 | 19.73 |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5.00 |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11.67 |
| | 나노종합기술원 | 16.39 |
| | 한국뇌연구원 | 29.70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16.11 |
| | 한국광기술원 | 20.30 |
|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20.70 |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21.88 |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25.85 |
| | 한국자동차연구원 | 18.30 |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24.13 |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22.13 |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 구분 | 기관명 | 간접비 비율(%) |
|--------------------|-----------|-----------|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 고등기술연구원 | 18.40 |
| | 삼성서울병원 | 22.03 |
| | 키엘연구원 | 18.56 |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17.10 |
| | 한국나노기술원 | 17.55 |
| | 한국선급 | 24.52 |
|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 36.80 |

제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회계기준 개정 사유 ◆

① 국가R&D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보안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등 **연구 직접비 필수 항목 추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등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금 계정 반영**

② 출연(연)과 기타 비영리기관 간의 회계기준 통일성 강화

- 현재 출연(연) 회계기준과 기타 비영리기관 회계기준 간 통일성 부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일관성 및 형평성 저하
 - 출연(연)과 기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통일화하여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의 신뢰성 증대**

③ 공통수익·비용 배부기준을 제시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

- 연구사업과 기관 목적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기관별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 빈도, 활동 비중, 제원조달 비중, 총수익 비율, 간접비수익 비율 등

④ 기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의 공신력 강화

- 그간 간접비 산출 시 비공식 변환보고서 제출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관의 공식 결산서가 아니므로 제출자료의 신뢰성 우려 제기
- 2026년 간접비 산출부터는 **간접비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 후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작성기준이 되는 간접비 회계기준을 신속히 개정하여 공신력 강화 필요

제1절 회계기준 개정 배경 및 목적

1. 회계기준 개정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新제도 도입 등 연구환경의 변화
 - '20.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통보 후 과학기술 환경 변화 및 연구개발비 항목 변경
 - '21.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및 간접비 항목과 사용용도 변경
 - 직접비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간접비에는 학생산 재보험료 신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연구지원인력의 직접비 사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등 R&D 규정 변화에 따른 회계기준 개정 소요 발생
 - 통합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준비금 계정,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도입에 따른 신규 계정 등 필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은 상기 연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미 개정하여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22.1월 5차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2. 회계기준 개정 목적

- 새로운 연구환경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시
 - 최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이 확보된 회계정보 산출
- R&D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표준처리 기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간접비산출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여 연구기관 담당자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관별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제2절 회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재무상태표

□ 건설중인 자산의 분류 변경

- (제17조, 제18조)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을 건설중인유형자산과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구분
 - 출원과 등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허 및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등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선 지출된 비용을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분류 필요

□ 연구지원준비금 대상 항목 변경

- (제23조②) 연구지원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목적성간접비 항목에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활동지원금, 기술창업출연출자금** 추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항목을 수정

□ 각종 준비금 항목 정비

- (제23조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를 합하여 **통합관리 준비금 신설**
- (제23조④)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료 수입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준비금 신설**
- (제23조⑤) 신설되는 기술지원준비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의 명칭을 **기술료준비금**으로 변경
- (제23조⑥)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수정**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 적립금 등 추가

□ 출연잉여금 적용대상 명확화

- (제25조) 비유동자산 중에서 출연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내역을 주석에 추가 기재
- (제25조①) 회계처리가 불명확하던 비유동자산의 자본적지출을 시설 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명시
 - ※ 시설잉여금은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및 기관 자체예산 등의 재원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정의
- 다만, 상환의무 등 사용용도의 제약으로 시설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항목은 제외

2. 운영성과표

□ 운영성과표의 구분 단위 명시

- (제28조③) 운영성과표는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

□ 공통수익과 공통비용의 배분방법 명시

- (제29조)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에 배분하는 기준 마련
 - ※ (제29조 5호) 어떤 수익과 비용 항목이 복수의 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 빈도, 활동 비중, 자원조달 비중, 총수익 비율, 간접비수익 비율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익 계정과목 분류체계 변경

- (제31조①-5호) 기술료수익을 연구사업수익에 추가
 - ※ 기술료수익 :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타 기관에 이전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 (제31조①-6호) 연구 관련 수익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닌 경우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분하고, 세부계정과목을 명시

6. 기타연구사업수익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한다. 또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제25조의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을 포함한다.

- 1)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익을 말한다.
- 2)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및 연구기관시설출연금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으로서 시설비 중 자본적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을 포함한다.
- 3) 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은 기타연구사업수익 중에서 1)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과 2)연구기관 운영출연금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 (제31조②) 기존 기관목적사업수익은 **기관목적수익으로 수정하고, 기관출연수익과 기관사업 수익으로 구분함**

□ 사업비용 계정과목 분류체계 변경

- (제35조②) 연구사업기타원가를 자체사업비, 인건비성경비 및 시설장비비로 구분
 - 연구기관시설출연금원가는 시설장비비 중 시설구축비와 연구기관운영출연금원가는 시설 장비비 중 수선유지비와 일치
- (제36조) 기존 회계기준에 조문이 없었던 **기관목적비용 조문을 신설하고, 기관출연비용과 기관사업비용의 정의 추가**

〈회계기준 개정 전·후 운영성과표 양식〉

| 개정 전 | | | 개정 후 | |
|---------------|-----|---|----------------|-----|
| 계정과목 | 금액 | | 계정과목 | 금액 |
| I. 사업수익 | | | I. 사업수익 | |
| 1. 연구사업수익 | | | 1. 연구사업수익 | |
| 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 xxx | | (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 xxx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 xxx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 xxx |
| 3) 수탁연구사업수익 | xxx | | (3) 수탁연구사업수익 | xxx |
| 4) 기술지원사업수익 | xxx | | (4) 기술지원사업수익 | xxx |
| <신설> | | | (5) 기술료수익 | xxx |
| 5) 기타연구사업수익 | xxx | ⇒ | (6) 기타연구사업수익 | xxx |
| <신설> | | | 1)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 | xxx |
| | | | 2)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 | xxx |
| | | | 3) 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 | xxx |
| 2. 기관목적사업수익 | | | 2. 기관목적수익 | |
| 1) 기관목적출연금수익 | xxx | | (1) 기관출연금수익 | xxx |
| 2) 기관사업수익 | xxx | | (2) 기관사업수익 | xxx |
| II. 사업비용 | | | II. 사업비용 | |
| 1. 연구사업비용 | | | 1. 연구사업비용 | |
| (1) 연구사업직접원가 | xxx | | (1) 연구사업직접원가 | xxx |
| (2) 연구사업간접원가 | xxx | | (2) 연구사업간접원가 | xxx |
| (3) 연구사업기타원가 | xxx | | (3) 연구사업기타원가 | xxx |
| <신설> | | | 1) 자체사업비 | xxx |
| | | | 2) 인건비성경비 | xxx |
| | | | 3) 시설장비비 | xxx |
| 2. 기관목적사업비용 | | | 2. 기관목적비용 | |
| 1) 기관목적출연금비용 | xxx | | (1) 기관출연금비용 | xxx |
| 2) 기관사업비용 | xxx | | (2) 기관사업비용 | xxx |

3. 주석 및 부속명세서

□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확대

○ (제56조) 출연연 회계기준 해설서 상의 주요 주석사항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표시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1. 연구기관 등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연구기관 등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
6.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
7. 종업원 대여금의 변동 내용
8. 선수금의 구성 및 내용
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
10. 충당부채의 변동 내용
11. 준비금 및 적립금의 변동 내용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시설잉여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내역
14.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15. 연구기관기본사업원가의 처리내역
16.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
17. 현물기부의 내용
18.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19.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20.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2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40.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삭제)
22. 유가증권의 변동 및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23.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 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연구기관 등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부속명세서 종류 확대

- (제59조)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 항목 확대

〈부속명세서의 종류〉

1.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4. 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5. 자체사업비명세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연구지원준비금세부명세서(별지 제9호의 3 서식)
7. 기술지원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4 서식)
8. 기술료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5 서식)
9. 연구지원비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10. 상기 외에 필요한 명세서는 연구기관의 재무상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다.

4. 부칙

시행일

- (부칙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보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반영

- (부칙 제4조) 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작성하도록 명시

제3절 향후 추진일정

□ 간접비 회계기준 개정 향후 일정

- 2024년 10월 초순 : 관련 연구기관에 간접비 회계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2024년 11월 하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 2024년 12월 초순 : 간접비 회계기준 개정(안) 확정
- 2024년 12월 중순 : 관련 연구기관에 간접비 회계기준 통보

[첨부1] 회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산내역 자료 등에 적용한다.

제3조(회계의 목적) 연구기관 등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연구기관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

② “복식부기”란 연구기관 등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 회계처리는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용 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등 제59조 각호에 따른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명세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보고실체) ①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② 소관연구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는 경우 소관연구기관과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소관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과목의 구분 표시) ① 재무제표상의 표준 계정과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 된다.

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⑥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일반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제11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 내”라 함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정상적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기관 등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 활동을 말한다.
3.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4.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2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용역 제공능력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연구기관 등이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연구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연구기관 등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연구기관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와 준비금및적립금으로 구분한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출연잉여금, 잉여금, 기타순자산으로 구분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연구비미수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연구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비채권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⑤ 청구가능연구비는 회계연도말 현재 연구사업이 계약기간상 진행 중인 경우에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기성연구비에 대한 채권액으로 한다.

⑥ 미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⑦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⑧ 선급금은 연구재료·기자재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⑨ 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⑩ 선급법인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를 말한다.

⑪ 선급지방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⑫ 부가세대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⑬ 기타의 당좌자산은 제1항 내지 제1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장품은 연구기관 등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한 연구 및 시험용 재료, 유류비축액 등으로 한다.

- ② 미착품은 연구기관 등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연구용품, 연구시험용 원료와 재료 등의 외자도입품목 중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타의 재고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② 투자유가증권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 ③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 ④ 특정기금은 기금관리규정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금운용잔액으로 당해 기금자산의 운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변동과 잔액 등을 표시하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기타의 투자자산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7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지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 ②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 ③ 구축물은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궤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 ④ 조원은 정원의 수목 등 조경시설로 한다.
- ⑤ 연구기본시설은 연구설비·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 ⑥ 연구기술장비는 연구용 과학기자재 및 기술장비 등으로 한다.
- ⑦ 공기구·비품은 공기구·실험용비품·사무용비품 등으로 한다.
- ⑧ 선박은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 ⑨ 차량운반구는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 ⑩ 장서는 연구용도서, 학술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출판물과 제반 보관형태의 연구관련

자료로 한다.

⑪ 건설중인유형자산은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 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⑫ 미착장비는 연구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연구용 장비로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⑬ 기타의 유형자산은 제1항 내지 제1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8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는 연구용 또는 관리용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사용수익권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④ 건설중인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선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에 해당 무형자산으로 대체한다.

⑤ 기타의 무형자산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19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된 예치금 잔액으로 당해 적립예치금의 운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변동과 잔액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종업원장기대여금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

③ 예치보증금은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④ 장기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향후 보전이 예상되는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하며,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제20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비미지급금은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한다.
- ②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 ③ 미지급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 ④ 연구비선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⑤ 기타선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⑥ 예수금은 일시적인 제예수액으로 한다.
- ⑦ 제세예수금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으로 한다.
- ⑧ 부가세예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로 한다.
- ⑨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⑩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 ⑪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 ⑫ 선수수익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으로 한다.
- ⑬ 수입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취득한 창업보육비예치금, 하자보수보증금,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
- ⑭ 기타의 유동부채는 제1항 내지 제1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21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준비금및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차입금은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② 외자정부차입금은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부담하는 외화장기차입금으로 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
- ③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그 사용목적은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 ⑤ 리스부채는 연구기관 등이 리스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기타의 비유동부채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제22조(충당부채)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금액을 추산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준비금및적립금) 준비금및적립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준비금및적립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② 연구지원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출연출자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③ 통합관리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한 준비금으로 한다.

④ 기술지원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 등 기술지원사업 관련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⑤ 기술료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기술료수익에서 해당 주무부처 이체금액과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액 등 기술료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⑥ 연구개발적립금 또는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은 연구기관 등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한다.

제24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은 설립자기본금 등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현물출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하고, 재산이관액 등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조직의 변경, 기타 출자금의 발생 등에 의한 기본순자산의 변동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5조(출연잉여금) 출연잉여금은 다음과 같으며, 비유동자산 중에서 출연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내역과 출연잉여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시설잉여금은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및 기관 자체예산 등의 재원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단, 준비금 등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처분(또는 회수)시 처분금액의 용도가 제한된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한다.

② 특별출연잉여금은 정부출연금 및 연구비 이외의 타 기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자산, 그리고 외국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기타출연잉여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출연잉여금으로 하며, 향후 보전이 예상되는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출연잉여금에 포함한다.

제26조(잉여금 또는 결손금)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전기이월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운영성과표상 당기운영이익(손실)로 구분한다.

제27조(기타순자산) 기타순자산은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성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8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수행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9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성과표는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리고 회계관습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 사항이 중요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어떤 수익과 비용 항목이 복수의 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활동비중, 자원조달 비중, 총수익 비율, 간접비수익

비율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성과표의 구성) ① 사업이익 또는 사업손실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사업비용 중 연구사업비용은 연구사업직접원가, 연구사업간접원가 및 연구사업기타원가로 구분된다.

② 당기운영이익(손실)은 사업이익 또는 사업손실에서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1조(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연구사업수익과 기관목적수익으로 구분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사업수익은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술료수익 및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서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개발사업(주요사업)을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발주사업을 포함한다.

3. 수탁연구사업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한다.

4. 기술지원사업수익은 연구과제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5. 기술료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타 기관에 이전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6. 기타연구사업수익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않는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한다.

1)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서 비유동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및 연구기관 시설출연금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으로서 시설비 중 자본적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 경비수익을 포함한다.

3) 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은 기타연구사업수익 중에서 1)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과 2)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② 기관목적수익은 기관출연금수익과 기관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

1. 기관출연금수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목적 이외의 기관목적 사업(인재양성사업 또는 의료사업 등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기관사업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 외에 기관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제32조(사업수익의 실현) 사업수익의 실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수익은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용역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사업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3조(사업수익금액) ① 사업수익금액은 연구과제 계약금액 중 당기에 실현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는 사업별로 구분 표시된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간접비수익을 포함한다.

제34조(연구사업직접원가) ①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사업수익에 대응되도록 사업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는 원가만을 포함하고 간접비성 원가는 제외한다.

③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제35조(연구사업간접원가) ① 연구사업간접원가는 연구기관 등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연구사업직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 관련 경상비용을 포함한다.

- ② 연구사업간접원가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한다.
- ③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
- ④ 연구사업기타원가는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연구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 ⑤ 연구사업기타원가는 각 호와 같이 자체사업비, 인건비성경비 및 시설장비비로 구분한다.
 1. 자체사업비는 기술지원준비금, 기술료준비금, 연구개발적립금 및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용(시설장비비 제외)으로 한다.
 2. 인건비성경비는 연구인력인건비, 능률성과급, 기술료인센티브 및 퇴직급여보전액으로 하며, 연구인력인건비 중 연구사업직접원가 또는 자체사업비에 반영된 인건비는 차감표시한다.
 3. 시설장비비는 기관의 시설 관련 출연금 및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설구축비, 장비구입비 및 수선유지비로 한다.

제36조(연구사업기타원가) 기관목적비용은 연구활동 외에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관출연비용 과 기관사업비용으로 구분한다.

- ① 기관출연비용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목적 이외의 기관목적 사업(인재양성사업 또는 의료사업 등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기관사업비용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 외에 기관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7조(사업외손익) ① 사업외수익은 연구기관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일반사업외수익과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으로 구분한다.

- ② 연구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임대료수익·기부금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대손충당금환입·연구비정산차익·전기 오류수정이익·기타의연구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 ③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며, 수익사업 출연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통합관리준비금환입액·기술지원 준비금환입액·기술료준비금환입액·연구개발적립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 ④ 사업외비용은 연구기관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일반 사업외비용과 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으로 구분한다.

⑤ 일반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유형자산·처분손실·연구비정산차손·법인세등·전기오류수정손실·기타의사업외비용 등을 포함한다.

⑥ 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연구지원준비금전입액·통합관리준비금전입액·기술지원준비금전입액·기술료준비금전입액·연구개발적립금전입액 등을 포함한다.

⑦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38조(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제39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제4장 현금흐름표

제4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연구기관 등의 현금흐름과 현금의 변동내용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4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42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사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구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44조의 투자활동과 제4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사업수익(연구비미수금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및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사업직접원가와 사업간접원가(연구비미지급금의 결제 포함), 이자비용 및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43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연구비미수금·연구비미지급금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운영이익(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3.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

제44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제45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시설잉여금의 증가, 장·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연구활동이 아닌 일반계약 거래상 발생한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장·단기차입금의 상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등이 포함된다.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46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한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순자산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7조(순자산변동표의 과목과 범위)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장부금액조정내역을 보고한다.

① 기본순자산은 설립자기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② 출연잉여금은 시설잉여금, 특별출연잉여금, 기타출연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③ 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④ 기타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항목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4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출연잉여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③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

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고 출연잉여금과 상계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50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③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공신력이 있는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기타순자산으로 표시한다.

④ 지분증권 중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한다.

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제51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토지, 건설중인유형자산 및 미착장비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은 출연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③ 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52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내부에서 개발하는 등 적절한 평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목가치로 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상각액은 출연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③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53조(비유동자산의 취득 후 지출)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54조(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직원 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또는 사학연금을 가입한 임직원의 퇴직금은 납부한 금액을 당기 비용처리한다.

④ 종업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55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연구기관 등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연구기관 등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연구기관 등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
6.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
7. 종업원 대여금의 변동 내용
8. 선수금의 구성 및 내용
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

10. 총당부채의 변동 내용
11. 준비금 및 적립금의 변동 내용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시설잉여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내역
14.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15. 연구기관기본사업원가의 처리내역
16.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
17. 현물기부의 내용
18.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19.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20.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2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삭제>
22. 유가증권의 변동 및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23.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 기제가 요구되는 사항 중 연구기관 등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57조(선택적 주식기제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식기제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 등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8조(주식기제방법) 주식기제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제59조(부속명세서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4. 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5. 자체사업비명세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연구지원준비금세부명세서(별지 제9호의 3 서식)
7. 기술지원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4 서식)
8. 기술료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5 서식)
9. 연구지원비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10. 상기 외에 필요한 명세서는 연구기관의 재무상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보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연구기관 등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도 있다.

제3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적용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기관 등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자산 | | | | |
| I. 유동자산 | | × × × | | × × × |
| 1. 당좌자산 | | × × × | |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2) 단기금융상품 | | | | |
| 3) 유가증권 | | | | |
| 4) 연구비미수금 (대손충당금) | | | | |
| 5) 청구가능연구비 | | | | |
| 6) 미수금 (대손충당금) | | | | |
| 7) 미수수익 | | | | |
| 8) 선급금 | | | | |
| 9) 선급비용 | | | | |
| 10) 선급법인세 | | | | |
| 11) 선급지방소득세 | | | | |
| 12) 부가세대급금 | | | | |
| 13) 기타의당좌자산 | | | | |
| 2. 재고자산 | | × × × | | × × × |
| 1) 저장품 | | | | |
| 2) 미착품 | | | | |
| 3) 기타의재고자산 | | | | |
| II. 비유동자산 | | × × × | | × × × |
| 1. 투자자산 | | × × × | | × × × |
| 1) 장기금융상품 | | | | |
| 2) 투자유가증권 | | | | |
| 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 | | |
| 4) 기금자산 | | | | |
| 5) 기타의투자자산 | | | | |
| 2. 유형자산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1)토지 | | × × × | | × × × |
| 2)건물 (감가상각누계액) | | | | |
| 3)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 | | | |
| 4)조원 | | | | |
| 5)연구기본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 | | |
| 6)연구기술장비 (감가상각누계액) | | | | |
| 7)공기구·비품 (감가상각누계액) | | | | |
| 8)선박 (감가상각누계액) | | | | |
| 9)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 | | | |
| 10)장서 (감가상각누계액) | | | | |
| 11)건설중인유형자산 | | | | |
| 12)미착장비 | | | | |
| 13)기타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 | | |
| 3.무형자산 | | | | |
| 1)지식재산권 | | | | |
| 2)소프트웨어 | | × × × | | × × × |
| 3)사용수익권 | | | | |
| 4)건설중인무형자산 | | | | |
| 5)기타의무형자산 | | | | |
| 4.기타비유동자산 | | | | |
| 1)퇴직급여적립예치금 | | | | |
| 2)종업원장기대여금 | | | | |
| 3)예치보증금 | | × × × | | × × × |
| 4)장기선급비용 | | | | |
| 5)기타의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 | | |
| 부채 | | _____ | | _____ |
| I. 일반부채 | | × × × | | × × × |
| 1. 유동부채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1)연구비미지급금 | | | | |
| 2)단기차입금 | | ××× | | ××× |
| 3)미지급금 | | ××× | | ××× |
| 4)연구비선수금 | | | | |
| 5)기타선수금 | | | | |
| 6)예수금 | | | | |
| 7)제세예수금 | | | | |
| 8)부가세예수금 | | | | |
| 9)미지급비용 | | | | |
| 10)미지급법인세 | | | | |
| 11)유동성장기부채 | | | | |
| 12)선수수익 | | | | |
| 13)수입보증금 | | | | |
| 14)기타의유동부채 | | | | |
| 2.비유동부채 | | | | |
| 1)장기차입금 | | | | |
| 2)외자정부차입금 | | | | |
| 3)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국민연금전환금) | | ××× | | ××× |
| 4)충당부채 | | | | |
| 5)리스부채 | | | | |
| 6)기타의비유동부채 | | | | |
| II.준비금및적립금 | | | | |
| 1.준비금 | | | | |
|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2)연구지원준비금 | | | | |
| 3)통합관리준비금 | | ××× | | ××× |
| 4)기술지원준비금 | | ××× | | ××× |
| 5)기술료준비금 | | | | |
| 2.적립금 | | | | |
| 1)연구개발적립금 | | | | |
| 2)기관발전적립금 | | | | |
| | | ××× | | ××× |
| 부채총계 | | | | |
| 순자산 | | | | |
| I.기본순자산 | | | | |
| 1.기본금 | | ××× | | ××× |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1)설립자기분금 | | | | |
| 2)기본재산 | | ××× | | ××× |
| 2.특정기금 | | ××× | | ××× |
| 1)원금보존기금 | | | | |
| II.출연잉여금 | | | | |
| 1.시설잉여금 | | ××× | | ××× |
| 2.특별출연잉여금 | | | | |
| 3.기타출연잉여금 | | ××× | | ××× |
| III.잉여금(또는 결손금) | | | | |
| 1.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 | | | |
| 2.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IV.기타순자산 | | ××× | | ××× |
| 1.유가증권평가손익 | | | | |
| 순자산총계 | | ××× | | ××× |
| 부채와순자산총계 | | _____ | | _____ |
| | | ××× | | ××× |
| | | _____ | | _____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사업수익 | | ××× | | ××× |
| 1. 연구사업수익 | | ××× | | ××× |
| (1)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 | | | |
| (2)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 | | | |
| (3)수탁연구사업수익 | | | | |
| (4)기술지원사업수익 | | | | |
| (5)기술료수익 | | | | |
| (6)기타연구사업수익 | | | | |
| ①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 | | | | |
| ②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 | | | | |
| ③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 | | | | |
| 2. 기관목적수익 | | | | |
| 1)기관출연수익 | | ××× | | ××× |
| 2)기관사업수익 | | | | |
| II. 사업비용 | | | | |
| 1. 연구사업비용 | | | | |
| (1) 연구사업직접원가 | | ××× | | ××× |
| 1)연구기관기본사업원가 | | ××× | | ××× |
| 2)국가연구개발사업원가 | | ××× | | ××× |
| 3)수탁연구사업원가 | | | | |
| 4)기타연구사업원가 | | | | |
| ①기타의기타연구사업원가 | | | | |
| (2) 연구사업간접원가 | | | | |
| 1)인력지원비 | | | | |
| ①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 |
| (자체사업비배부액) | | | | |
| ②연구개발능력성과급 | | ××× | | ××× |
| ③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2)연구지원비 | | | | |
| ①기관공통비용 | | | | |
| ②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 | | |
| ③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 ××× | | ××× |
| ④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⑤학생산재보험료 | | | | |
| ⑥연구보안관리비 | | | | |
| ⑦연구윤리활동비 | | | | |
| ⑧연구활동지원금 | | | | |
| 3)성과활동지원비 | | | | |
| ①과학문화활동비 | | | | |
| ②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 | |
| ③기술창업출연·출자금 | | | | |
| (3) 연구사업기타원가 | | ××× | | ××× |
| 1)자체사업비 | | | | |
| ①자체연구사업비 | | | | |
| ②기술지원사용경비 | | | | |
| ③기술료사용경비 | | | | |
| 2)인건비성경비 | | | | |
| ①연구인력인건비 | | ××× | | ××× |
| (연구사업직접원가 배부액) | | | | |
| (자체사업비 배부액) | | | | |
| ②능률성과급 | | | | |
| ③기술료인센티브 | | | | |
| ④퇴직급여보전액 | | ××× | | ××× |
| 3)시설장비비 | | | | |
| ①시설구축비 | | | | |
| ②장비구입비 | | | | |
| ③수선유지비 | | | | |
| 2. 기관목적비용 | | | | |
| 1)기관출연비용 | | | | |
| 2)기관사업비용 | | ××× | | ××× |
| Ⅲ. 사업이익(손실)(Ⅲ = Ⅰ - Ⅱ) | | | | |
| Ⅳ. 사업외수익 | | | | |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1.일반사업외수익 | | | | |
| 1)이자수익 | | ××× | | ××× |
| (이자반납액) | | | | |
| 2)배당금수익 | | | | |
| 3)임대료수익 | | | | |
| 4)기부금수익 | | ××× | | ××× |
| 5)유가증권처분이익 | | | | |
| 6)외환차익 | | ××× | | ××× |
| 7)외화환산이익 | | ××× | | ××× |
| 8)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9)대손충당금환입 | | | | |
| 10)연구비정산차익 | | | | |
| 11)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12)기타의연구외수익 | | | | |
| 2.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 | | | | |
| 1)수익사업출연이익 | | | | |
| 2)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3)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 | | | | |
| 4)통합관리준비금환입액 | | | | |
| 5)기술지원준비금환입액 | | | | |
| 6)기술료준비금환입액 | | | | |
| 7)연구개발적립금환입액 | | | | |
| V.사업외비용 | | ××× | | ××× |
| 1.일반사업외비용 | | | | |
| 1)이자비용 | | | | |
| 2)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 3)유가증권처분손실 | | | | |
| 4)외환차손 | | | | |
| 5)외화환산손실 | | | | |
| 6)기부금 | | | | |
| 7)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8)연구비정산차손 | | ××× | | ××× |
| 9)법인세 등 | |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10)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11)기타의연구외비용 | | | | |
| 2.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 | | | | |
|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2)연구지원준비금전입액 | | | | |
| 3)통합관리준비금전입액 | | | | |
| 4)기술지원준비금전입액 | | | | |
| 5)기술료준비금전입액 | | | | |
| 6)연구개발적립금전입액 | | | | |
| VI.당기운영이익(손실)(VI=III+IV-V)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직접법)

현금흐름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 × × |
| 1.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 × × × |
| 1) 연구기관기본사업 수입 | | | | |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입 | | | | |
| 3) 수탁연구사업 수입 | | | | |
| 4) 기타연구사업 수입 | | | | |
| 5) 기술지원사업 수입 | | | | |
| 6) 기술료 수입 | | | | |
| 7) 기관목적사업 수입 | | | | |
| 8) 수입이자 유입액 | | | | |
| 9) 기타 사업외 수입 | | | | |
| 2.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 | | × × × |
| 1) 연구기관기본사업 지출 | | | | |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 | | | | |
| 3) 수탁연구사업 지출 | | | | |
| 4) 기타연구사업 지출 | | | | |
| 5) 연구사업간접비 지출 | | | | |
| 6) 연구관련기타비용 지출 | | | | |
| 7) 기관목적사업 지출 | | | | |
| 8) 지급이자 지출 | | | | |
| 9) 기타 사업외 지출 |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1)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 | × × × |
| 2) 유가증권의 처분 | | × × × | | × × × |
| 3) 장기대여금의 감소 | | | | |
| 4) 기금자산의 감소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5)유형자산의 처분 | | | | |
| 6)무형자산의 처분 | | | | |
| 7)퇴직급여적립예치금의 감소 | | | | |
| 8)종업원장기대여금의 감소 | | | | |
| 9)예치보증금의 감소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
| 1)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2)유가증권의 취득 | | | | |
| 3)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 ××× |
| 4)기금자산의 증가 | | | | |
| 5)유형자산의 취득 | | | | |
| 6)무형자산의 취득 | | | | |
| 7)퇴직급여적립예치금의 증가 | | | | |
| 8)종업원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
| 9)예치보증금의 증가 | |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1)시설잉여금의 증가 | | | | |
| 2)단기차입금의 차입 | | | | |
| 3)장기차입금의 차입 | | | | |
| 4)외자정부차입금의 도입 | | | | |
| 5)수입보증금의 증가 | | ××× | | ××× |
| 6)충당부채의 증가 | | ××× |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
| 1)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 2)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 |
| 3)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 | | | |
| 4)외자정부차입금의 상환 | | | | |
| 5)수입보증금의 감소 | | | | |
| 6)충당부채의 감소 | | | | |
| | | ××× | | ××× |
|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 | | |
| Ⅴ.기초의 현금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Ⅵ.기말의 현금 | | <hr/> ××× | | <hr/> ××× |
| | | <hr/> ××× | | <hr/> ××× |
| | | <hr/> ××× | | <hr/> ××× |
| | | <hr/> ××× | | <hr/> ××× |

[별지 제4호 서식](간접법)

현금흐름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1.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 1.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 ××× | | ××× |
| 1) 퇴직급여 | | | | |
| 2)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 3) 유가증권처분손실 | | | | |
| 4) 외화환산손실 | | | | |
| 5)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6)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8) 연구지원준비금전입액 | | | | |
| 9) 통합관리준비금전입액 | | | | |
| 10) 기술지원준비금전입액 | | | | |
| 11) 기술료준비금전입액 | | | | |
| 12) 연구개발적립금전입액 | | | | |
| 13) | | | | |
| ----- | | | | |
| 3.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 | | ××× |
| 1) 유가증권처분이익 | | | | |
| 2) 외화환산이익 | | | | |
| 3)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4) 대손충당금환입 | | | |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6) 수익사업출연이익 | | | | |
|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8) 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 | | | | |
| 9) 통합관리준비금환입액 | | | | |
| 10) 기술지원준비금환입액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11) 기술료준비금환입액 | | | | |
| 12) 연구개발적립금환입액 | | | | |
| 13) | | | | |
| ----- | | × × × | | × × × |
| 4.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 |
| 1) 연구비미수금의 감소(증가) | | | | |
| 2) 청구가능연구비의 감소(증가) | | | | |
| 3) 미수금의 감소(증가) | | | | |
| 4)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 | | |
| 5) 선급금의 감소(증가) | | | | |
| 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 | | |
| 7) 선급법인세 등의 감소(증가) | | | | |
| 8)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 | | |
| 9) 연구비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 |
| 1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 |
| 11) 연구비선수금의 증가(감소) | | | | |
| 12) 기타선수금의 증가(감소) | | | | |
| 13) 예수금의 증가(감소) | | | | |
| 14)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 | | |
| 15)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 | | |
| 16) 퇴직금의 지급 | | | | |
| 17) | | | | |
| ----- | | | | |
| <이하 직접법 참조 생략> | | × × × | |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 | × × × |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과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V. 기초의 현금 | | × × × _____ | | × × × _____ |
| VI. 기말의 현금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순자산변동표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제 × 기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 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기본 순자산 | 출연잉여금 | 잉여금 (결손금) | 기타 순자산 | 순자산총계 |
|-------------------------|-----------|-------|--------------|-----------|-------|
| 20×1. 1. 1. 잔액 | ××× | ××× | ××× | ××× | ××× |
| 회계정책변경 | ××× | ××× | ××× | ××× | |
| 회계오류수정 | ××× | ××× | ××× | ××× | |
| 재작성 잔액 | ××× | ×× | ×××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 |
| 20×1년 순자산변동 | ××× | ××× | ××× | ××× | ××× |
| 비유동자산 자본적지출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현물 출연 | | ××× | | | ××× |
| 유가증권평가손익 | | | | ××× | ××× |
| 20×1. 12. 31. 잔액 | ××× | ××× | ××× | ××× | ××× |
| 20×2. 1. 1. 잔액 | ××× | ××× | ××× | ××× | ××× |
| 회계정책변경 | ××× | ××× | ××× | ××× | ××× |
| 회계오류수정 | ××× | ××× | ××× | ××× | ××× |
| 재작성 잔액 | ××× | ××× | ×××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
| 20×2년 순자산변동 | ××× | ××× | ××× | ××× | ××× |
| 비유동자산 자본적지출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현물 출연 | | ××× | | | ××× |
| 유가증권평가손익 | | | | ××× | ××× |
| 20×2. 12. 31. 잔액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 합 계 |
|--------------------|--------------|------------------------|----------------------|------------|-----|
| | 연구기관 기본사업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 연구사업 | |
|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 | | | |
| 1. 인건비 | | | | | |
| 1) 내부인건비 | | | | | |
| 2) 외부인건비 | | | | | |
|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2. 학생인건비 | | | | | |
| 1) 학생인건비_일반 | | | | | |
|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 | | | | |
| 3.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 | | | |
|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 | | |
|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 | | |
|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 | | | |
| 5) 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 | | | | | |
| 4. 연구재료비 | | | | | |
| 1) 연구재료 구입비 | | | | |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 | | |
| 3) 연구재료 제작비 | | | | | |
| 5. 연구활동비 | | | | |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 | | |
|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 | | | |
| 3) 회의비 | | | | | |
| 4) 출장비 | | | | | |
| 5) 소프트웨어활용비 | | | | | |
| 6) 연구실운영비 | | | | | |
| 7) 연구인력지원비 | | | | | |
| 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 | | |
| 9) 종합사업관리비 | | | | | |
|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 | | |
| 11) 기타연구활동비 | | | | | |
| 6. 연구수당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항 목 | 제 x(당기) | | | | 합 계 |
|---------------------------------------|--------------|------------------------|----------------------|------------|-----|
| | 연구기관 기본사업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 연구사업 | |
| 7. 보안수당 | | | | | |
| 8.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 | |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 | | |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 | | | | |
| II.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 | | | | |
|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 | | | | |
| 1) 학생인건비 사용액 | | | | | |
|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 | | | | |
|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 | | | | |
| 1) 학생인건비 적립액 | | | | | |
|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 | | | | |
|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2) | | | | | |
| III. 연구사업직접원가(I + II) | | | | | |
| IV.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 | |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 | | |
| 1) 간접경비 | | | | | |
|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 | | |
|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 | | |
|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 | | |
|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 | | | |
| 4) 사업단·연구단운영비 | | | | | |
| 5)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6) 학생산재보험료 | | | | | |
| 7) 연구보안관리비 | | | | | |
| 8) 연구윤리활동비 | | | | | |
| 9) 연구활동지원금 | | | | | |
| 10) 과학문화활동비 | | | | | |
| 1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 | | | |
| 12) 기술창업출연·출자금 | | | | | |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 | | | | |
| V. 연구사업수익(I + IV) | | | | | |

* 운영성과표상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 통합관리준비금적립액은 연구사업 직접비 항목의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전)기 | | | | 합 계 |
|--------------------|--------------|------------------------|----------------------|------------|-----|
| | 연구기관 기본사업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 연구사업 | |
| 1. 연구사업직접비수익 | | | | | |
| 1. 인건비 | | | | | |
| 1) 내부인건비 | | | | | |
| 2) 외부인건비 | | | | | |
|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2. 학생인건비 | | | | | |
| 1) 학생인건비_일반 | | | | | |
|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 | | | | |
| 3.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 | | | |
|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 | | |
|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 | | |
|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 | | | |
| 5) 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 | | | | | |
| 4. 연구재료비 | | | | | |
| 1) 연구재료 구입비 | | | | |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 | | |
| 3) 연구재료 제작비 | | | | | |
| 5. 연구활동비 | | | | |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 | | |
|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 | | | |
| 3) 회의비 | | | | | |
| 4) 출장비 | | | | | |
| 5) 소프트웨어활용비 | | | | | |
| 6) 연구실운영비 | | | | | |
| 7) 연구인력지원비 | | | | | |
| 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 | | |
| 9) 종합사업관리비 | | | | | |
|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 | | |
| 11) 기타연구활동비 | | | | | |
| 6. 연구수당 | | | | | |
| 7. 보안수당 | | | | | |
| 8.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 | |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항 목 | 제 x(전)기 | | | | 합 계 |
|---------------------------------------|--------------|------------------------|----------------------|------------|-----|
| | 연구기관 기본사업 | 국가연구 개발사업 (정부수탁) | 수탁 연구사업 (민간수탁) | 기타 연구사업 | |
|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 | | | | |
| II.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 | | | | |
|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 | | | | |
| 1) 학생인건비 사용액 | | | | | |
|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 | | | | |
|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 | | | | |
| 1) 학생인건비 적립액 | | | | | |
|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 | | | | |
|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2) | | | | | |
| III. 연구사업직접원가 (I + II) | | | | | |
| IV. 연구사업간접비수익 | | | | | |
|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 | | | | |
| 1) 간접경비 | | | | | |
|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
| 2. 목적성간접비수익 | | | | | |
|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 | | |
|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 | | |
|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 | | | |
| 4) 사업단·연구단운영비 | | | | | |
| 5)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6) 학생산재보험료 | | | | | |
| 7) 연구보안관리비 | | | | | |
| 8) 연구윤리활동비 | | | | | |
| 9) 연구활동지원금 | | | | | |
| 10) 과학문화활동비 | | | | | |
| 1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 | | | |
| 12) 기술창업출연·출자금 | | | | | |
|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 | | | | |
| V. 연구사업수익 (I + IV) | | | | | |

* 운영성과표상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 통합관리준비금적립액은 연구사업 직접비 항목의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관련 내역 설명 필요

[별지 제7호 서식]

인건비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 | 제 x(당)기 | | | | | | | | 비 고 |
|-----------------------------|---------------|--------|-------------|---------------------|-------------|---|-------------|---------------------|-------------|---|-----|
| | | | 내 부 인 력 | | | | 외 부 인 력 | | | | |
| | |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
|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 | | | | | | | | | | |
| 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 |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 | | | | | | | |
| | | 속인성과급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 | | | | | | | |
| | | 시간외수당 | | | | | | | | | |
| | | 소계(c) | | | | | | | | | |
| |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 | | | | | | |
| | | 퇴직급여부채 | | | | | | | | | |
| | | 소계(d) | | | | | | | | | |
| | 3. 급여성경비 | 제수당 | | | | | | | | | |
| 월정직책급 | | | | | | | | | | | |
| 선택적복지 | | | | | | | | | | | |
| 소계(e) | | | | | | | | | | | |
| 인건비 계상액(f=a+b+c+d+e) | | | | | | | | | | | |
| 4. 인건비외 급여 | 연구수당 | | | | | | | | | | |
| | 보안수당 | | | | | | | | | | |
| | 기술료인센티브 | | | | | | | | | | |
| |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 | | | | | | | | | |
| | 능력성과급 | | | | | | | | | | |
| | 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 | | | | | | | |
| | 퇴직급여보전액 | | | | | | | | | | |
| 소계(g) | | | | | | | | | | | |
|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 | | | | | | | | |

(*) 각 월별 인건비 지급일 현재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을 말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 | 제 x(당기) | | | | | | 비 고 | | |
|-----------------------------|---------------|--------|-------------|---------------------|-------------|---|-------------|---------------------|-----|-------------|---|
| | | | 내 부 인 력 | | | | 외 부 인 력 | | | | |
| | |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연구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 지원인력 인건비 | 계 |
|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 | | | | | | | | | | |
| 1. 급여 | 기본 급여 | 정액급 | | |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성과 급여 | 평가성과급 | | | | | | | | | |
| | | 속인성과급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2. 법정 부담금 | 법정 수당 | 연차수당 | | | | | | | | | |
| | | 시간외수당 | | | | | | | | | |
| | | 소계(c) | | | | | | | | | |
| |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 | | | | | | |
| | | 퇴직급여부채 | | | | | | | | | |
| | | 소계(d) | | | | | | | | | |
| | | 계 | | | | | | | | | |
| 3. 급여성경비 | 제수당 | | | | | | | | | | |
| | 월정직책급 | | | | | | | | | | |
| | 선택적복지 | | | | | | | | | | |
| | 소계(e) | | | | | | | | | | |
| 인건비 계상액(f=a+b+c+d+e) | | | | | | | | | | | |
| 4. 인건비의 급여 | 연구수당 | | | | | | | | | | |
| | 보안수당 | | | | | | | | | | |
| | 기술료인센티브 | | | | | | | | | | |
| |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 | | | | | | | | | |
| | 능력성과급 | | | | | | | | | | |
| | 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 | | | | | | | |
| | 퇴직급여보전액 | | | | | | | | | | |
| | 소계(g) | | | | | | | | | | |
|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 | | | | | | | | | |

(*) 각 월별 인건비 지급일 현재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을 말함

[별지 제8호 서식]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 | | 합 계 |
|---|------------|--------------|------------|------------|--------------|------------|------------|
| | 내부인력 | | | 외부인력 | | | |
| | 연구인력 | 연구근접 지원인력 | 지원인력 | 연구인력 | 연구근접 지원인력 | 지원인력 | |
| I. 기초잔액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II. 당기 전입액*1 1. 인건비 2. 퇴직예치금 이자 3. 연구지원준비금*2 4. 결산잉여금 | ××× | ××× | ××× | ××× | ××× | ××× | ××× |
| III. 당기 지급액 (인원) 1. 퇴직/중간정산 (인원) 2.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IV. 기말잔액*3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전)기 | | | | | | 합 계 |
|---|--------------------------|--------------------------|--------------------------|--------------------------|--------------------------|--------------------------|--------------------------|
| | 내부인력 | | | 외부인력 | | | |
| | 연구인력 | 연구근접 지원인력 | 지원인력 | 연구인력 | 연구근접 지원인력 | 지원인력 | |
| I. 기초잔액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II. 당기 전입액*1 1. 인건비 2. 퇴직예치금 이자 3. 연구지원준비금*2 4. 결산잉여금 | ××× | ××× | ××× | ××× | ××× | ××× | ××× |
| III. 당기 지급액 (인원) 1. 퇴직/중간정산 (인원) 2. 과학기술인공제회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기말잔액*3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전입액은 재원별(인건비, 퇴직예치금이자, 연구지원준비금, 결산잉여금) 구분
2. 파견, 교육,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력의 퇴직충당금전입액을 간접비(연구지원준비금)로 총당
3. 기말잔액은 퇴직금 추계액과 일치하여야 함
4. 퇴직전환금은 퇴직금 지급액으로 보아 기말잔액은 퇴직전환금 차감 후 순액으로 표시

[별지 제9호 서식]

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 | | 합 계 |
|---------------|-------------|---------------|-------------|-------------|-------------|------------|-----|
| | 연구개발 적립금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연구지원 준비금 | 통합관리 준비금 | 기술지원 준비금 | 기술료 준비금 | |
| I. 전기말 잔액 | ××× | ××× | ××× | ××× | ××× | ××× | ××× |
| II. 당기 사용액 | ××× | ×××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III. 당기 중 적립액 | ××× | ××× | ××× | ××× | ××× | ××× | ××× |
| 1. 관련 수익금 | | | | | | | |
| 2. 이자 재투자 | | | | | | | |
| 3. | | | | | | | |
| IV. 당기 말 잔액 | ××× | ××× | ××× | ××× | ××× | ××× | ××× |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전기) | | | | | | 합 계 |
|---------------|-------------|---------------|-------------|-------------|-------------|------------|-----|
| | 연구개발 적립금 |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 연구지원 준비금 | 통합관리 준비금 | 기술지원 준비금 | 기술료 준비금 | |
| I. 전기말 잔액 | ××× | ××× | ××× | ××× | ××× | ××× | ××× |
| II. 당기 사용액 | ××× | ×××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III. 당기 중 적립액 | ××× | ××× | ××× | ××× | ××× | ××× | ××× |
| 1. 관련 수익금 | | | | | | | |
| 2. 이자 재투자 | | | | | | | |
| 3. | | | | | | | |
| IV. 당기 말 잔액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2 서식] 신설

자체연구사업비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 제 x(전)기 | | | |
|--------------------|-----------------|----------------------|-------|-----|-----------------|----------------------|-------|-----|
| | 연구 개발 적립금 | 정부 수탁 과제 이자 | 00000 | 합 계 | 연구 개발 적립금 | 정부 수탁 과제 이자 | 00000 | 합 계 |
| 1. 인건비 | | | | | | | | |
| 1) 내부인건비 | | | | | | | | |
| 2) 외부인건비 | | | | | | | | |
|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 |
|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 | | | | | |
| 2. 학생인건비 | | | | | | | | |
| 1) 학생인건비 | | | | | | | | |
| 3.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 | | | | | | |
|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 | | | | | |
|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 | | | | | |
|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 | | | | | | |
| 4. 연구재료비 | | | | | | | | |
| 1) 연구재료 구입비 | | | | | | | | |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 | | | | | |
| 3) 연구재료 제작비 | | | | | | | | |
| 5. 연구활동비 | | | | | | | | |
|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 | | | | | | |
|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 | | | | | | |
| 3) 회의비 | | | | | | | | |
| 4) 출장비 | | | | | | | | |
| 5) 소프트웨어활용비 | | | | | | | | |
| 6) 연구실운영비 | | | | | | | | |
| 7) 연구인력지원비 | | | | | | | | |
| 8)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 | | | | | |
| 9) 종합사업관리비 | | | | | | | | |
|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 | | | | | |
| 11) 기타연구활동비 | | | | | | | | |
| 6. 연구수당 | | | | | | | | |
| 7. 보안수당 | | | | | | | | |
| 8.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항 목 | 제 x(당)기 | | | | 제 x(전)기 | | | |
|-------------------|-----------------|----------------------|-------|-----|-----------------|----------------------|-------|-----|
| | 연구 개발 적립금 | 정부 수탁 과제 이자 | 00000 | 합 계 | 연구 개발 적립금 | 정부 수탁 과제 이자 | 00000 | 합 계 |
|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 | | | | | | |
| 10. 연구개발부담비 | | | | | | | | |
| 자체연구사업비 합계 | | | | | | | | |

* 기술료준비금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술료준비금사용명세서에 반영

[별지 제9호 3 서식] 신설

연구지원준비금세부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 | | |
|---------------|---------------|-----------------|---------------|--------------|------|------|-----|
| |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교육파견인 력인건비 등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안전 관리비 | 0000 | 0000 | 합 계 |
| I. 전기말 잔액 | ××× | ××× | ××× | ××× | ××× | ××× | ××× |
| II. 당기 사용액 | ××× | ×××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III. 당기 중 적립액 | ××× | ××× | ××× | ××× | ××× | ××× | ××× |
| 1. 간접비 수익 | | | | | | | |
| 2. 이자 채투자 | | | | | | | |
| 3. | | | | | | | |
| IV. 당기 말 잔액 | ××× | ××× | ××× | ××× | ××× | ××× | ××× |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전기) | | | | | | |
|---------------|---------------|-----------------|----------------|--------------|------|------|-----|
| |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교육파견인 력인건비 등 | 사업단연구단 단운영비 | 연구실안전 관리비 | 0000 | 0000 | 합 계 |
| I. 전기말 잔액 | ××× | ××× | ××× | ××× | ××× | ××× | ××× |
| II. 당기 사용액 | ××× | ×××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III. 당기 중 적립액 | ××× | ××× | ××× | ××× | ××× | ××× | ××× |
| 1. 간접비 수익 | | | | | | | |
| 2. 이자 채투자 | | | | | | | |
| 3. | | | | | | | |
| IV. 당기 말 잔액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4 서식] 신설

기술지원준비금사용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 x(당)기 | | | 제 x(전)기 | | | | |
|--------------------------|-----------|-----|-----|---------|-----------|-----|-----|----|
| | 장비 사용료 | 000 | 000 | 합계 | 장비 사용료 | 000 | 000 | 합계 |
| I. 운영비 | | | | | | | | |
| 1. 인건비 | | | | | | | | |
| 1) 전담운영인력인건비 | | | | | | | | |
| 2) 전담지원인력인건비 | | | | | | | | |
| 2. 운용비 | | | | | | | | |
| 1) 유류비 | | | | | | | | |
| 2) 시약·재료비 | | | | | | | | |
| 3. 관리비 | | | | | | | | |
| 1) 교육훈련비 | | | | | | | | |
| 2) 공공요금 등 | | | | | | | | |
| II. 유지보수비 | | | | | | | | |
| 1. 유지비 | | | | | | | | |
| 1) 수선유지비 | | | | | | | | |
| 2) 연구시설장비유지비 | | | | | | | | |
| 2. 교체비 | | | | | | | | |
| 1) 부품교체비 | | | | | | | | |
| 2) 시설교체비 | | | | | | | | |
| III. 기타경비*1 | | | | | | | | |
| 1. 000 | | | | | | | | |
| 2. *** | | | | | | | | |
| IV. 기술지원사용경비 (I+II+III) | | | | | | | | |
| V. 기술지원 간접비흡수액*2 | | | | | | | | |
| VI. 기술지원준비금사용액 합계 (IV+V) | | | | | | | | |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6에서 정한 운영유지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은 기타경비에 반영

*2.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에서 흡수하는 금액

[별지 제9호 5 서식] 신설

기술료준비금사용명세서

제×(당)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전)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항 목 | 제×(당)기 | | 제×(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기술료 사용경비 | | | | |
| 1. 관계부처 납부액 | | | |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2) 산업통상부 | | | | |
| 3) 000 | | | | |
| 2.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 | | | |
| 1) 기술이전비 | | | | |
| 2) 기술평가비 | | | | |
| 3) 기술사업화비 | | | | |
|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 | | | |
| 1) 지식재산권 출원비 | | | | |
| 2) 지식재산권 등록비 | | | | |
| 3) 지식재산권 유지비 | | | | |
| 4. 연구개발 재투자 | | | | |
| 1) 연구시설장비비 | | | | |
| 2) 연구재료비 | | | | |
| 3) 연구활동비 | | | | |
| 4) 연구수당 | | | | |
| 5) 연구개발부담비 | | | | |
| 5. 기타경비 | | | | |
| 1) | | | | |
| 2) | | | | |
| 기술료 사용경비 합계 | | | | |
| II. 기술료 인센티브 | | | | |
| 1. 연구참여자 보상금 | | | | |
| 2.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 | | | | |
| 기술료 인센티브 합계 | | | | |
| III. 기술료준비금사용액 합계 (I+II) | | | | |

* 관계부처 납부액은 기술료준비금을 인식한 후 후속적인 사유로 관계부처에 반납하는 경우에 반영

*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상기 용도 외에 사용하는 비용은 기타경비에 반영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지원비 명세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 과 목 | 제×(당)기 | 제×(전기) |
|---------------------------------------|--------|--------|
| 1. 연구지원비 | ××× | ××× |
| 1) 기관공통비용 | ××× | ××× |
| (1) 일반수용비 | | |
| ① 소모품비 | | |
| ② 인쇄비 | | |
| ③ 광고선전비 | | |
| ④ 지급수수료 | | |
| ⑤ 교육훈련비 | | |
|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 |
| ① 세금과공과 | | |
| ② 수도광열비 | | |
| ③ 지급보험료 | | |
| (3) 시설·장비유지비 | | |
| ① 수선유지비 | | |
| ② 유류비 | | |
| ③ 지급임차료 | | |
| ④ 외주용역비 | | |
| (4) 여비교통비 | | |
| (5) 업무추진비 | | |
| (6) 기타기관운영비 | | |
| ① 기타복리후생비 | | |
| ② 피복비와급량비 | | |
| ③ 외부지원인력인건비 | | |
| ④ 자산취득비 | | |
| ⑤ 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 | |
|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 | ××× |
|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 | ××× |
| 4)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5) 학생산재보험료 | ××× | ××× |
| 6) 연구보안관리비 | ××× | ××× |
| 7) 연구윤리활동비 | ××× | ××× |
| 8) 연구활동지원금 | ××× | ××× |
| 연구지원비 합계 | ××× | ××× |

(참고사항) 연구사업간접원가 비목별 해설

※ 주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에 따른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시 변경가능함

| 비 목 | | 해 설 |
|----------------------|--------|--|
| I. 인력지원비 | | |
| 1)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4대보험 등) 및 퇴직급여 등 포함 |
| | 급여 | 연구기관 소속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 | 법정부담금 | 연구기관 소속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법정수당 및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 |
| | 급여성경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월정직책급 및 선택적 복지 경비 |
|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 3) 교육·파견인력인건비 | | <p>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
| II. 연구지원비 | | |
| 1) 기관공통비용 |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 (1) 일반수용비 | |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기관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
| ①소모품비 | | |
| | 사무용품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홍보물품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소모성물품비 | 「물품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대가 등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비 목 | 해 설 |
|---------------|---|
| 간행물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의료용품비 | 「물품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의료용품 구입비 |
| 기계장치및부품비 | 이동성 및 고정성 기계장치에 대한 소모성공구 및 부품 구입비 |
| ②인쇄비 | |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 ③광고선전비 | |
| 광고료및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 지급액 (1)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및 회계 실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2) 광고선전비의 지출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한다. |
| 견본비 | 상품·제품 등의 품질, 형상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제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따르는 비용 |
| ④지급수수료 | |
| 업무대행수수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
| 송금수수료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 |
| 등기료법정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 검정및시험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 외주가공비 | 외부에 제품 등의 가공을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 |
| 포장비 |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 보관비 | 물품 등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
| 운송비 |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
| 상하차비 | 선적하역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등 |
| 지급의료비 | 공상치료비,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화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
| 기타수수료 |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상기 이외의 비용 |
| ⑤교육훈련비 | |
| 내부교육비 |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수원임차료 등 |
| 국내교육비 |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직원의 학자금 지원액, 학원수강료 지원액, 견학비 등 |
| 국외교육비 |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 해외연수비용 등 |

| 비 목 | 해 설 |
|-------------|---|
| (2) 공공요금및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
| ①세금과공과 |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팩시밀리 등의 회선 사용료 등 |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②수도광열비 | |
| 전기료 | 전기 사용에 따라 발생한 전기요금 |
|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 취사에 필요한 유류, 도시가스 등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 수도료 | 상·하수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요금 |
| 오물수거료 | 쓰레기, 정화조 내 오물 등의 수거 비용 |
| ③지급보험료 | |
| 지급보험료 |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
| (3) 시설장비유지비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①수선유지비 | |
| 유형자산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유형자산수선유지비는 수선비 지출 대상자산의 종류(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타일반유형자산)에 따라 세부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
| ②유류비 | |
| 유류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증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 ※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연료비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아닌 유류비로 분류하며,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는 수도광열비의 연료비로 분류한다. |
| ③지급임차료 | |
| 토지임차료 | 토지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 |
| 건물임차료 |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 |
| 기타자산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말한다.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
| 운용리스료 | 운용리스계약으로 비품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리스료 지급액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비 목 | 해 설 |
|-------------|---|
| ④외주용역비 | |
| 관리용역비 | 기관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제비용 |
| 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 |
| 기타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번호사 및 수임·고문번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 |
| (4) 여비교통비 | |
| 국내여비 | 자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출장여비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 국외여비 |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 |
| (5) 업무추진비 | |
| 행사진행경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 일반업무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서업무경비 |
| 특정업무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참석 사례비, 시험관리비 등 특정한 업무에 따른 경비 |
| (6) 기타기관운영비 |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비용 |
| ①기타복리후생비 | |
| 특근매식비 | 경상사무 특근자 매식비, 현물식사대체 급식비 등 (1) 회식비는 식대가 아닌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의 일반업무비)로 분류된다. (2) 특근매식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하게 발생하는 매식비, 현물식사대체 급식비를 말한다. 식대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급식비는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급여되는 주식대 등을 말한다. |
| 일숙직비 |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
| 시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
| 경조금 | 경조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 건강진단비 | 건강진단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
| 선물대 | 직원에게 대한 선물 구입비 등 |
| 재해보상비 | 일시적 재해 보상금 지급액 |
| 모임지원비 |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비 목 | | 해 설 |
|--------------------------|------------------|--|
| |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말하며, 여기서 선택적 복지제도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
| ②피복비와급량비 | | |
| | 피복비 | 작업복을 포함한 상시착용 피복, 침구(당직용 침구 포함) 및 개인장구구입비, 직접 제조 시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 | 급량비 | 주식비, 부식비 및 후식비로서 합숙할 경우에는 숙비를 포함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
| ③외부지원인력인건비 | | |
| | 외부지원인력인건비 |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에 대한 급여 등 |
| ④자산취득비 | | ※ 연구지원부서 사용목적으로 구입되는 공기구비품취득비에 한함 |
| | 차량운반구취득비 | 육상·수상·항공 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 | 공기구비품취득비 | 1)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2)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 | 장서취득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
| |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
| ⑤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 | |
| | 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연구기관 운영비로써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수행과 관련성이 없거나 기관목적사업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자세사업비'로 분류함 |
|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 4) 연구실안전관리비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 5) 학생산재보험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
| 6) 연구보안관리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비 목 | 해 설 |
|----------------|--|
| |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 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 7)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
| Ⅲ. 성과활용지원비 | |
|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 2)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 3) 기술창업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좌동〉</p> | |
|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산내역 자료 등에 적용한다.</p> | <p>제2조(적용범위) 〈좌동〉</p> | |
| <p>제3조(회계의 목적) 연구기관 등의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연구기관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3조(회계의 목적) 〈좌동〉</p> | |
| <p>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p> <p>①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p> <p>② “복식부기”란 연구기관 등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p> <p>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p> | <p>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좌동〉</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5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 회계처리는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용 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p>제5조(일반원칙) 〈좌동〉</p> | |
| <p>제6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p> | <p>제6조(회계관습의 존중) 〈좌동〉</p> | |
| <p>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분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u>사업수익및비용명세서·인건비명세서·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u></p> | <p>제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 좌동 - ② - 좌동 - ③ <u>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등 제59조 각호에 따른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명세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u></p> | <p>• 제59조 각호에 따른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명세서를 작성</p>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여야 한다.</p> <p>④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1.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2.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 <p>④ - 좌동 -</p> | |
| <p>제8조(보고실체)</p> <p>①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p> <p>② 소관연구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되는 경우 소관연구기관과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소관연구기관은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p> | <p>제8조(보고실체)</p> <p>〈좌동〉</p> | |
| <p>제9조(과목의 구분 표시)</p> <p>① 재무제표상의 표준 계정과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p> | <p>제9조(과목의 구분 표시)</p> <p>〈좌동〉</p> | |
| <p>제10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p> <p>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p> | <p>제10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p> <p>〈좌동〉</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③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p> <p>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총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p> <p>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p> <p>⑥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⑦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일반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p> | | |
| <p>제11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내”라 함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정상적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기관 등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 활동을 말한다. 3.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4.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p>제11조(정의) 〈좌동〉</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제2장 재무상태표 제12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p> <p>① 재무상태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용역 제공능력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 <p>제2장 재무상태표 제12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p> <p>〈좌동〉</p> | |
| <p>제1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p> <p>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p> <p>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연구기관 등이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p> <p>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연구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p> <p>3. “순자산”이란 연구기관 등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p> <p>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p> <p>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연구기관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p> <p>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p> | <p>제1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p> <p>〈좌동〉</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p> <p>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와 준비금및적립금으로 구분한다.</p> <p>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출연잉여금, 잉여금, 기타순자산으로 구분한다.</p> <p>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p>제14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자산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p> <p>③ 유가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p> <p>④ 연구비미수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연구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정상</p> | <p>제14조(당좌자산) 〈좌동〉</p>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비채권과 받을어음으로 한다.</p> <p>⑤ 청구가능연구비는 회계연도말 현재 연구사업이 계약기간상 진행 중인 경우에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기성연구비에 대한 채권액으로 한다.</p> <p>⑥ 미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p> <p>⑦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p> <p>⑧ 선급금은 연구재료·기자재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p> <p>⑨ 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p> <p>⑩ 선급법인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법인세를 말한다.</p> <p>⑪ 선급지방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선급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p> <p>⑫ 부가세대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p> <p>⑬ 기타의 당좌자산은 제1항 내지 제1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p> | | |
| <p>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저장품은 연구기관 등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한 연구 및 시험용 재료, 유류비축액 등으로 한다.</p> <p>② 미착품은 연구기관 등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연구용품, 연구시험용 원료와 재료 등의 외자도입품목 중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기타의 재고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p> | <p>제15조(재고자산) 〈좌동〉</p> | |
| <p>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p> | <p>제16조(투자자산) 〈좌동〉</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② 투자유가증권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여 주석에 기재한다.</p> <p>③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p> <p>④ 특정기금은 기금관리규정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기금운용잔액으로 당해 기금자산의 운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변동과 잔액 등을 표시하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⑤ 기타의 투자자산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p> | | |
| <p>제17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토지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p> <p>②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p> <p>③ 구축물은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경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p> <p>④ 조원은 정원의 수목 등 조경시설로 한다.</p> <p>⑤ 연구기본시설은 연구설비·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p> <p>⑥ 연구기술장비는 연구용 과학기자재 및 기술장비 등으로 한다.</p> <p>⑦ 공기구·비품은 공기구·실험용</p> | <p>제17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좌동〉</p>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비품·사무용비품 등으로 한다.</p> <p>⑧ 선박은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p> <p>⑨ 차량운반구는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p> <p>⑩ 장서는 연구용도서, 학술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출판물과 제반 보관형태의 연구관련 자료로 한다.</p> <p>⑪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p> <p>⑫ 미착장비는 연구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연구용 장비로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p> <p>⑬ 기타의 유형자산은 제1항 내지 제1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p> | <p>⑪ 건설중인유형자산은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p> | <p>• 건설중인자산을 건설중인유형자산과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구분</p> |
| <p>제18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지식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p> <p>② 소프트웨어는 연구용 또는 관리용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p> <p>③ 사용수익권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p> <p>〈신설〉</p> <p>④ 기타의 무형자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p> | <p>제18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좌동〉</p> <p>④ 건설중인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선 지출된 비용으로 취득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에</p> | <p>• 출원과 등록에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특허, 개발에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등은 사</p>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p> | <p>해당 무형자산으로 대체한다. ⑤ 기타의 무형자산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p> | <p>용가능 시점까지 선 지출된 비용을 건설중인무형자산으로 분류</p> |
| <p>제19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된 예치금 잔액으로 당해 적립예치금의 운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변동과 잔액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② 종업원장기대여금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p> <p>③ 예치보증금은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p> <p>〈신설〉</p> <p>④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하며,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p> | <p>제19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퇴직급여적립예치금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된 예치금 잔액으로 당해 적립예치금의 운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변동과 잔액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② 종업원장기대여금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p> <p>③ 예치보증금은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p> <p>④ 장기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향후 보전이 예상되는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⑤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하며,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p> | <p>•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 등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장기선급비용 계정 신설</p> |
| <p>제20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구비미지급금은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한다.</p> <p>②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p> <p>③ 미지급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p> <p>④ 연구비선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⑤ 기타선수금은 정상적 연구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p> | <p>제20조(유동부채) 〈좌동〉</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⑥ 예수금은 일시적인 제예수액으로 한다.</p> <p>⑦ 제세예수금은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일시적 제세예수금으로 한다.</p> <p>⑧ 부가세예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로 한다.</p> <p>⑨ 미지급비용은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p> <p>⑩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p> <p>⑪ 유동성장기부채는 장기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p> <p>⑫ 선수수익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으로 한다.</p> <p>⑬ 수입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취득한 창업보육비에치금, 하자보수보증금,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p> <p>⑭ 기타의 유동부채는 제1항 내지 제1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p> | | |
| <p>제21조(비유동부채)</p> <p>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준비금 및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p> <p>① 장기차입금은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② 외자정부차입금은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부담하는 외화장기차입금으로 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한다.</p> <p>③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p> <p>⑤ 리스부채는 연구기관 등이 리스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⑥ 기타의 비유동부채는 제1항 내</p> | <p>제21조(비유동부채)</p> <p>〈좌동〉</p>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지 제5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p> | | |
| <p>제22조(총당부채)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금액을 추산하여 총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총당부채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p> | <p>제22조(총당부채) <좌동></p> | |
| <p>제23조(준비금및적립금) 준비금및적립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준비금및적립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② 연구지원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 과급,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④ 기술개발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기술료수입에서 해당 주무부처 이체금액과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p> | <p>제23조(준비금및적립금) 준비금및적립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준비금및적립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좌동> ② 연구지원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 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사업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출연출자금)에 지출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③ - 삭제 - ③ 통합관리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통합관리계정에 적합한 준비금으로 한다. ④ 기술지원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기술지원사업수입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 등 기술지원사업 관련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⑤ 기술료준비금은 연구기관 등이 기술료수입에서 해당 주무부처 이체금액과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액 등 기술료사업 관련 경비를 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항목을 수정 • 연구개발준비금은 삭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및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규정 신설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료 수입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기술지원준비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의 명칭을 기술료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기술사업화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하여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p> <p>⑤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기관 등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수행, 노후연구시설·장비의 교체 등 연구기반 확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한다.</p> | <p>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p> <p>⑥ 연구개발적립금 또는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은 연구기관 등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한다.</p> | <p>등록비 등을 포함하도록 기술료사업 관련 경비로 표현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용도로 문구 조정하고,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적립금(명칭 여하에 상관없음) 등을 추가 |
| <p>제24조(기본순자산)</p> <p>① 기본순자산은 설립자기본금 등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p> <p>② 현물출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하고, 재산이관액 등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한다.</p> <p>③ 조직의 변경, 기타 출자금의 발생 등에 의한 기본순자산의 변동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 <p>제24조(기본순자산)</p> <p>〈좌동〉</p> | |
| <p>제25조(출연잉여금)</p> <p>출연잉여금은 다음과 같으며, 출연잉여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① 시설잉여금은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유가증권 포함) 및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p> <p>② 특별출연잉여금은 정부출연금 및 연구비 이외의 타 기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자산, 그리고 외국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p> <p>③ 기타출연잉여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출연잉여금으로 한다.</p> | <p>제25조(출연잉여금)</p> <p>출연잉여금은 다음과 같으며, 비유동자산 중에서 출연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내역과 출연잉여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① 시설잉여금은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및 기관 자체예산 등의 재원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단, 준비금 등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처분(또는 회수)시 처분금액의 용도가 제한된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한다.</p> <p>② 〈좌동〉</p> <p>③ 기타출연잉여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출연잉여금으로 하며, 향후 보전이 예상되는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출연잉여금에 포함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잉여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내역을 구분 • 회계처리가 불명확하던 비유동자산의 자본적지출을 시설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명시함(다만, 상환의무 등 사용용도의 제약으로 시설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항목은 제외하도록 함) • 차입금 재원으로 기관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출연잉여금에 포함하도록 개정 |
| <p>제26조(잉여금 또는 결손금)</p> <p>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전기이월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운영성과표상 당기운영이익(손실)로</p> | <p>제26조(잉여금 또는 결손금)</p> <p>〈좌동〉</p>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구분한다. | | |
| 제27조(기타순자산) 기타순자산은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성된다. | 제27조(기타순자산) <좌동> | |
| <p align="center">제3장 운영성과표</p> <p>제28조(운영성과표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수행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신설></p> | <p align="center">제3장 운영성과표</p> <p>제28조(운영성과표 목적과 작성단위) ① <좌동> ② <좌동> ③ <u>운영성과표의 작성은 연구기관 등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성과표상의 계정과목을 설명 |
| <p>제29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성과표는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리고 회계관습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 사항이 중요할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신설> | <p>제29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u>어떤 수익과 비용 항목이 복수의 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활동비중, 자원조달 비중, 총수익 비율, 간접비수익 비율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과 기관목적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각 사업에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30조(운영성과표의 구성)</p> <p>① 사업이익 또는 사업손실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사업비용 중 연구사업비용은 연구사업직접원가, 연구사업간접원가 및 연구사업기타원가로 구분된다.</p> <p>② 당기운영이익(손실)은 사업이익 또는 사업손실에서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p> | <p>제30조(운영성과표의 구성)</p> <p>〈좌동〉</p> | |
| <p>제31조(사업수익)</p> <p>사업수익은 연구사업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구분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구사업수익은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및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p> <p>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서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개발사업(주요사업)을 말한다.</p> <p>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발주사업을 포함한다.</p> <p>3. 수탁연구사업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한다.</p> <p>4. 기술지원사업수익은 연구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p> <p>〈신설〉</p> | <p>제31조(사업수익)</p> <p>사업수익은 연구사업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구분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① 연구사업수익은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료수익 및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p> <p>1. 〈좌동〉</p> <p>2. 〈좌동〉</p> <p>3. 〈좌동〉</p> <p>4. 〈좌동〉</p> <p>5. 기술료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타 기관에 이전하는</p> | <p>• 기관목적사업수익을 기관목적수익으로 명칭 변경</p> <p>• 기술료수익을 연구사업수익에 포함함</p> <p>• 기술료수익에 대한 정의 추가</p>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5. 기타연구사업수익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한다. 또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제25조의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을 포함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기관목적사업수익은 기관목적출연수익과 기관목적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p> <p>1. 기관목적출연수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재양성사업 또는 의료사업 등을 말한다.</p> <p>2. 기관목적사업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기관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을 말한다.</p> | <p>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p> <p>6. 기타연구사업수익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않는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삭제〉</p> <p>1)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서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익을 말한다.</p> <p>2)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은 연구기관정부출연금 중 연구기관 기본사업수익 및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으로서 시설비 중 자본적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을 포함한다.</p> <p>3) 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은 기타연구사업수익 중에서 1)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과 2)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p> <p>② 기관목적수익은 기관출연수익과 기관사업수익으로 구분된다.</p> <p>1. 기관출연수익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목적 이외의 기관목적사업(인재양성사업 또는 의료사업 등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p> <p>2. 기관사업수익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 외에 기관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관련 수익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닌 경우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분 출연시설잉여금만 예외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을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수익인식 방법을 통일시키되, 정부출연금의 자본적지출액과 운영비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과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으로 구분 연구기관시설출연금수익과 연구기관운영출연금수익에 속하지 않는 기타연구사업수익은 기타의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분류 연구목적 이외의 기관목적사업은 기관사업수익으로 분류 기관목적출연수익을 기관출연수익으로 명칭 변경 기관목적사업수익을 기관사업수익으로 명칭 변경 |
| <p>제32조(사업수익의 실현) 사업수익의 실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1. 사업수익은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p> | <p>제32조(사업수익의 실현) 〈좌동〉</p>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용역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사업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p> <p>2.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p> <p>3. 연구용역 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p> | | |
| <p>제33조(사업수익금액)</p> <p>① 사업수익금액은 연구과제 계약 금액 중 당기에 실현된 금액으로 한다.</p> <p>②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③ 사업수익및비목명세서는 사업별로 구분 표시된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간접비수익을 포함한다.</p> | <p>제33조(사업수익금액)</p> <p>① - 좌동 -</p> <p>② - 좌동 -</p> <p>③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는 사업별로 구분 표시된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간접비수익을 포함한다.</p> | <p>•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의 영향으로 연구사업직접비수익과 사업직접원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세서의 명칭을 변경함</p> |
| <p>제34조(연구사업직접원가)</p> <p>①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사업수익에 대응되도록 사업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② 연구사업직접원가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원가만을 포함하고 간접비성 원가는 제외한다.</p> <p>③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취득한 유·무형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p> | <p>제34조(연구사업직접원가)</p> <p>〈좌동〉</p> <p>③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직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p> | <p>• 시설잉여금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구 수정</p> |
| <p>제35조(연구사업간접원가)</p> <p>① 연구기관 등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연구사업직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상비용을 포함한다.</p> <p>② 연구사업간접원가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한다.</p> <p>③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취득한 유·무형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p> | <p>제35조(연구사업간접원가 및 연구사업기타원가)</p> <p>① 연구사업간접원가는 연구기관 등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연구사업직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 관련 경상비용을 포함한다.</p> <p>② - 좌동 -</p> <p>③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취득한 비유동자산(유가증권 포함)은 연구사업간접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설잉여금으로 대체한다.</p> | <p>• 연구와 관련 없는 활동에서 발생한 경상비용은 기관목적비용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음</p> <p>• 시설잉여금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구 수정</p> <p>• 구 제36조(연구사업기타원가)의 내용을 제35조와 통합</p>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신설〉</p> <p>〈신설〉</p> | <p>④ 연구사업기타원가는 연구사업 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연구관련 비용을 포함한다.</p> <p>⑤ 연구사업기타원가는 각 호와 같이 자체사업비, 인건비성경비 및 시설장비비로 구분한다.</p> <p>1. 자체사업비는 기술지원준비금, 기술료준비금, 연구개발적립금 및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용(시설장비비 제외)으로 한다.</p> <p>2. 인건비성경비는 연구인력인건비, 능률성과급, 기술료인센티브 및 퇴직급여보전액으로 하며, 연구인력인건비 중 연구사업직접원가 또는 자체사업비에 반영된 인건비는 차감표시한다.</p> <p>3. 시설장비비는 기관의 시설 관련 출연금 및 기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관발전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설구축비, 장비구입비 및 수선유지비로 한다.</p> | <p>• 구 제36조(연구사업기타원가)의 내용을 제35조와 통합하고, 출연 연 회계기준에 맞춰 비용 명칭 수정</p> |
| <p>제36조(연구사업기타원가) -</p> <p>— ① 연구사업기타원가는 연구사업 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연구관련 비용을 포함한다.</p> <p>— ② 연구사업기타원가는 자체연구 사업비, 기타사업비 및 노후시설개체비로 구분한다.</p> | <p>〈삭제〉</p> | <p>• 구 제36조(연구사업기타원가)의 내용을 제35조와 통합</p> |
| <p>〈신설〉</p> | <p>제36조(기관목적비용)</p> <p>기관목적비용은 연구활동 외에 기관의 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관출연비용 과 기관사업비용으로 구분한다.</p> <p>① 기관출연비용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목적 이외의 기관목적사업(인재양성사업 또는 의료사업 등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p>② 기관사업비용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 외에 기관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 <p>• 기관목적비용의 정의 및 계정 설명 추가</p>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37조(사업외손익)</p> <p>① 사업외수익은 연구기관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일반사업외수익과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으로 구분한다.</p> <p>② 일반사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기술료수익·설비자산사용료수익·임대료수익·기부금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대손충당금환입·연구비정산차익·전기오류수정이익·기타의사업외수익 등을 포함한다.</p> <p>③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며, 수익사업출연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연구개발준비금환입액·기술개발준비금환입액·연구개발적립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p> <p>④ 사업외비용은 연구기관의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일반사업외비용과 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으로 구분한다.</p> <p>⑤ 일반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유형자산·처분손실·연구비정산차손·법인세등·전기오류수정손실·기타의사업외비용 등을 포함한다.</p> <p>⑥ 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연구지원준비금전입액·연구개발준비금전입액·기술개발준비금전입액·연구개발적립금전입액 등을 포함한다.</p> <p>⑦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p> | <p>제37조(사업외손익)</p> <p>① - 좌동 -</p> <p>② 연구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임대료수익·기부금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대손충당금환입·연구비정산차익·전기오류수정이익·기타의연구외수익 등을 포함한다.</p> <p>③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며, 수익사업출연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통합관리준비금환입액·기술지원준비금환입액·기술료준비금환입액·연구개발적립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p> <p>④ - 좌동 -</p> <p>⑤ - 좌동 -</p> <p>⑥ 준비금및적립금전입액은 연구기관 등이 준비금및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발생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연구지원준비금전입액·통합관리준비금전입액·기술지원준비금전입액·기술료준비금전입액·연구개발적립금전입액 등을 포함한다.</p> <p>⑦ - 좌동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기타수익으로 분류한 기술료수익과 설비자산사용료수익을 삭제 • 신설된 통합관리준비금 및 기술지원준비금의 전입액과 환입액을 반영 • 신설된 통합관리준비금 및 기술지원준비금의 전입액과 환입액을 반영 |
| <p>제38조(외환차손익)</p> <p>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차</p> | <p>제38조(외환차손익)</p> <p><좌동></p>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p> | | |
| <p>제39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p> | <p>제39조(외화환산손익) <좌동></p> | |
| <p>제4장 현금흐름표 제4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연구기관 등의 현금흐름과 현금의 변동내용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p> | <p>제4장 현금흐름표 제40조(현금흐름표) <좌동></p> | |
| <p>제4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p> | <p>제4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좌동></p> | |
| <p>제42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사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구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44조의 투자활동과 제4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사업수익(연구비미수금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 유입이 포함된다. ③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사업직접원가와 사업간접원가(연구비미지급금의 결제 포함), 이자비용 및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p> | <p>제42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좌동></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43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p> <p>①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p> <p>② 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연구비미수금·연구비미지급금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 운영이익(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p> <p>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p> <p>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p> <p>3.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p> | <p>제43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p> <p>〈좌동〉</p> | |
| <p>제44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p> <p>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등이 포함된다.</p> <p>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p> | <p>제44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좌동〉</p>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p> | | |
| <p>제45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시설잉여금의 증가, 장·단기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연구활동이 아닌 일반계약 거래상 발생한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장·단기차입금의 상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등이 포함된다.</p> | <p>제45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좌동></p> | |
| <p>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46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한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순자산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p> | <p>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46조(순자산변동표) <좌동></p> | |
| <p>제47조(순자산변동표의 과목과 범위)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을 보고한다. ① 기본순자산은 설립자기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② 출연잉여금은 시설잉여금, 특별출연잉여금, 기타출연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③ 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 ④ 기타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항목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금액과 내역을 보고한다.</p> | <p>제47조(순자산변동표의 과목과 범위) <좌동></p> | |
| <p>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4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p> | <p>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48조(자산의 평가기준) <좌동></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한다. 다만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p> <p>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출연잉여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p>③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고 출연잉여금과 상계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p> | | |
| <p>제49조(채권의 평가)</p> <p>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p> <p>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p> <p>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p> | <p>제49조(채권의 평가) 〈좌동〉</p> | |
| <p>제50조(유가증권의 평가)</p> <p>①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 <p>제50조(유가증권의 평가) 〈좌동〉</p> | |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p> <p>③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공신력이 있는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기타순자산으로 표시한다.</p> <p>④ 지분증권 중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경우에도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계상한다.</p> <p>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p> | | |
| <p>제51조(유형자산의 평가)</p> <p>① 토지, <u>건설중인 자산</u> 및 미착장비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은 <u>출연잉여금의 시설잉여금에서 차감한다.</u></p> <p>③ 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 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p> | <p>제51조(유형자산의 평가)</p> <p>① 토지, <u>건설중인유형자산</u> 및 미착장비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p> <p>②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은 <u>출연잉여금에서 차감한다.</u></p> <p>③ - 좌동 -</p> | <p>• 건설중인자산을 건설중인유형자산으로 재분류</p> |
| <p>제52조(무형자산의 평가)</p> <p>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내부에서 개발하는 등 적절한 평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목가치로 할 수 있다.</p> <p>②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상각액은 <u>출연잉여금의 시설잉여금에서 차감한다.</u></p> | <p>제52조(무형자산의 평가)</p> <p>① - 좌동 -</p> <p>② 연구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장부금액과 상각액은 <u>출연잉여금에서 차감한다.</u></p>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③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p> | <p>③ - 좌동 -</p> | |
| <p>제53조(비유동자산의 취득 후 지출)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p> | <p>제53조(비유동자산의 취득 후 지출) <좌동></p> | |
| <p>제54조(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평가)</p> <p>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직원 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또는 사학연금을 가입한 임직원의 퇴직금은 납부한 금액을 당기 비용처리한다.</p> <p>④ 종업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p> | <p>제54조(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평가) <좌동></p> | |
| <p>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p> <p>제55조(주석의 정의)</p> <p>‘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p> | <p>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p> <p>제55조(주석의 정의) <좌동></p> | |
| <p>제56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연구기관 등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연구기관 등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p> | <p>제56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연구기관 등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연구기관 등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p> | <p>• 출연연 회계기준 해설서 상의 주요 주석사항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표시</p>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2. 연구기관 등이 채택한 회계정책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p> <p>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p> <p>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5. 현물기부의 내용</p> <p>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p> <p>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p> <p>8.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p> <p>9.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p> <p>10.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p> <p>1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p> <p>12.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연구기관 등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p> | <p>2. 연구기관 등이 채택한 회계정책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p> <p>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p> <p>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p> <p>5. 유형자산의 변동 내용</p> <p>6. 무형자산의 변동 내용</p> <p>7. 종업원 대여금의 변동 내용</p> <p>8. 선수금의 구성 및 내용</p> <p>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p> <p>10. 충당부채의 변동 내용</p> <p>11. 준비금 및 적립금의 변동 내용</p> <p>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p> <p>13. 시설임여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내역</p> <p>14.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p> <p>15. 연구기관기본사업원가의 처리 내역</p> <p>16.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p> <p>17. 현물기부의 내용</p> <p>18.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p> <p>19.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p> <p>20.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p> <p>21.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p> <p><삭제></p> <p>22. 유가증권의 변동 및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p> <p>23.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 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연구기관 등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p> | |
| <p>제57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 등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p> | <p>제57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좌동></p>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
| 제58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 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 제58조(주석기재방법) <좌동> | |
| 제59조(부속명세서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를 비교식으로 작성한다. 1. 사업수익및비용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4. 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5. 연구지원비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 제59조(부속명세서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인건비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퇴직급여충당부채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4. 준비금및적립금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5. 자체사업비명세서(별지 제9호의 2 서식) 6. 연구지원준비금세부명세서(별지 제9호의 3 서식) 7. 기술지원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4 서식) 8. 기술료준비금사용명세서(별지 제9호의 5 서식) 9. 연구지원비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10. 상기 외에 필요한 명세서는 연구기관의 재무상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한다. | • 준비금 및 적립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명세서 추가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보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삭제> |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유 |
|---|---|--------------------------------|
| <p>제3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연구기관 등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p> <p>제4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적용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기관 등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신설〉</p> | <p>제2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연구기관 등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도 있다.</p> <p>제3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적용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기관 등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 (경과조치)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p> | <p>•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명시</p> |

제 5 장

결 론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 교육·파견인력인건비 항목 수정

□ 수정이유

- 현재 작성지침에서는 교육·파견인력인건비를 연구개발준비금 항목으로 표기하고 있음
- 그러나 회계기준에서 교육·파견인력인건비를 연구개발준비금에서 연구지원준비금 항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작성지침의 수정이 요구됨

□ 작성지침

- 표기 예시

교육·파견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으로 구성 등 25회 표기

- 관련항목 표기 회수: 26회

□ 회계기준

2021년도 회계기준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2022년도 회계기준

2. **연구지원준비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연구(수행)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 등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잔액은 용도별로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적립·사용하여야 하기에 용도별로 준비금 계정을 사용하여 적립하고 집행분에 대하여 환입시킨다.

따라서 연구기관 등은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출연·출자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연구지원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 등은 관리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 발생시 해당 자산, 비용과 준비금을 상계하지 않고 환입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목적성간접비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다음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급여
 -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중 기반시설·장비의 구축 운영비 제외

□ 수정 이유

- 현재 작성지침에서는 연구지원비 항목을 나열하면서 구축·운영비 항목을 함께 표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는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함
- 따라서 주로 출연(연)을 대상으로하는 본 작성지침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작성지침

- 작성지침상 표기 예시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구성

-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입비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관련항목 표기 회수 14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공통사용기준

-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3. 기술지원수익의 정의 수정

□ 수정이유

- 현재 작성지침에서는 기술지원수익을 정의하면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간접비수익 인식방법에서는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함
- 상호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간접비수익 산출 방법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작성지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기술지원사업 간접비수익】: 원칙적으로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이 때 직접비 집행액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기술지원사업수익 총액을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재투자를 위하여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선적립한 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 과거 5개년간 적립(사용예정금액) 및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술지원사업수익의 일부를 향후 직접비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규정에 따라 운용(집행)하고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예정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 과거 5개년간 적립(사용예정금액) 및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4. 기타연구사업수익 범위 수정

□ 수정이유

- 현재 작성지침에서는 수익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기타연구사업수익’에 연구개발출연금 중 수익적 지출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해당 항목은 회계기준상 ‘기관운영출연금수익’에 해당함
- 간접비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항목의 포함 여부는 연구사업수익 대 연구사업외수익간 수익비율 산출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작성 지침상 표기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표기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1안)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만 나열함
 - (제2안)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기관시설출연금수익, 기관운영출연금수익 모두 나열함

□ 작성지침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 회계기준

【제31조】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출연금수익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서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연구개발사업(주요사업)을 말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한다.

③ 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한다.

④ 기타연구사업수익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한다.

⑤ 기타목적사업수익

직접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구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관의 목적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기관시설출연금수익 : 정부출연금 중 건설비 및 시설비 재원으로서 비유동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익을 말한다.
2. 기관운영출연금수익 : 정부출연금 중 연구개발출연금수익 및 기관시설출연금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으로서 시설비 중 자본적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사업수익 : 연구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4. 기술료수익 : 연구기관 등의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 제외사업 수정

□ 수정이유

- 현재 작성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 제외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표기하다 보니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pm 20\%$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사업으로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해당 예외 처리의 취지 즉 정상적 간접비원가 부담 능력이 있는 연구과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적용 제외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과 실제 지급받은 간접비율이 $\pm 20\%$ 를 초과하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해당되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과 실제 지급받은 간접비율이 -20% 를 초과하는 사업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예시

| 구분 | 사업내용 |
|------------------|---|
|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적용 특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또한, '고시비율'과 '적용비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4가지 조합이 가능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고시비율: 과제의 최초 계약연도 고시비율 또는 연구수행(직접비 발생)연도의 고시비율
- 적용비율: 과제의 예산편성 비율 또는 흡수비율

□ 작성지침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적용
 -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적용 제외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pm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 지급 사업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구분 | 사업내용 |
|------------------|---|
|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적용 특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적용 제외항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와 기관의 관리목적상 직접비에 현물연구비를 계상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 포함하지 않음

6. 검토의견서 간접비실사 비율 산출 수식 표준화

□ 수정이유

- 현재 검토의견서 작성시 각 연도 및 연도 총계에 대해서 절사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검토의견서 Excel 서식상에는 각 연도별 간접비원가, 추가 소요 간접비원가에 대하여 Rounddown한 후 해당 비율의 합에 대해서 다시 Rounddown을 적용함
 - 이러한 절사 과정에서 간접비율이 0.03%까지 하락하는 오차를 나타낼 수 있음
 - 따라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금액을 직접비 및 간접비원가 등 1) 금액(천원 단위 Round)을 기준으로 합을 구한 후 2) 해당 합계금액에 대하여 비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간접비율 산출 흐름

○ 간접비 비율(안) [단위: %, 천원]

| 구 분 | A(실적) | | B(추가) | | 총간접비 (C=A+B) | | 직접비 |
|----------------------|---------------------|--------------------------|-------|----------------------|---------------------|-------------|--------------|
| '22년 간접비 비율 | 28.77% | 4,251,448천원 | 0.00% | 0천원 | 28.77% | 4,251,448천원 | 14,773,691천원 |
| '22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안) | Rounddown 27.21% | Rounddown 4,827,058천원 | 1.97% | 350,000천원 | 29.18% | 5,177,058천원 | 17,734,387천원 |
| '23회계연도 간접비실사 비율(안) | 28.00% | 5,116,784천원 | 1.91% | 350,000천원 | 29.91% | 5,466,784천원 | 18,271,762천원 |
| '24년 검토결과 간접비실사비율(안) | Rounddown 27.60% | Rounddown 4,971,921천원 | 1.94% | Rounddown 350,000 | Rounddown 29.54% | 5,321,921천원 | 18,003,075천원 |

- 변경후 간접비율 산출 흐름

○ 간접비 비율(안) [단위: %, 천원]

| 구 분 | A(실적) | | B(추가) | | 총간접비 (C=A+B) | | 직접비 |
|----------------------|--------|-------------|-------|-----------|---------------------|-------------|--------------|
| '22년 간접비 비율 | 28.77% | 4,251,448천원 | 0.00% | 0천원 | 28.77% | 4,251,448천원 | 14,773,691천원 |
| '22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안) | 27.21% | 4,827,058천원 | 1.97% | 350,000천원 | Rounddown 29.18% | 5,177,058천원 | 17,734,387천원 |
| '23회계연도 간접비실사 비율(안) | 28.00% | 5,116,784천원 | 1.91% | 350,000천원 | Rounddown 29.91% | 5,466,784천원 | 18,271,762천원 |
| '24년 검토결과 간접비실사비율(안) | 27.60% | 4,971,921천원 | 1.94% | 350,000 | Rounddown 29.54% | 5,321,921천원 | 18,003,075천원 |

□ 검토의견서 작성시 절사 기준

1.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셋째자리 버림) 통일 필요
 - 산출지침 상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 예시 : 계산내역 36.568%=> 표시방법 36.56%
 - 연도별 각각 절사 및 2개 회계연도 산술평균 시에도 절사

제2절 대학 간접비제도 개선 계획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현황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및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혹은 연간 연구비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학부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전체를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개선방안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력이 연구지원 업무(업무비중 및 한도는 추후결정)를 수행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근거자료는 (안)이며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도 산출기준 의결시 확정 예정

-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지원 인력이 실제로 회계연도 중 연구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서명(날인)의 확인서 제출

2.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현황

- ① 국가 R&D 연간연구비 1억 이상인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② 국가 R&D 연간연구비 1억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③ 국가 R&D 연간연구비가 없는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개선방안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의 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근거자료는 (안)이며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도 산출기준 의결시 확정 예정

-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이 실제로 회계연도 중 연구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서명(날인)의 확인서 제출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근거자료는 (안)이며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도 산출기준 의결시 확정 예정

-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지원 인력이 실제로 회계연도 중 연구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서명(날인)의 확인서 제출

